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2015. 11.

KINU 통일나침반 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창호(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2015. 11.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 약〉	1
I. 서론	5
1. 연구의 목표	5
2. 연구방법	8
3. 연구지역 개관	8
4. 연해주 코리안 사회의 형성과 북한 노동자	14
II.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 파견의 역사와 현황	20
1. 연해주로의 북한 노동자 파견	20
2. 소련 붕괴 후의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변화(1990년대 중반~2007년) ..	25
3. 최근의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2007년~현재)	27
III. 북한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인권	51
1. 북한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51
2. 북한 노동자의 연해주 송출 과정 및 노동 체계	55
3. 계획분과 노동자의 급여	62
4. ‘청부’ 형태의 노동 과정	70
5.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감시체계와 위협	73
6. 귀국 후의 북한 노동자	77
7. 북한 노동자의 인권과 향후 전망	78
IV. 결론	80
참고문헌	85

표목차

〈표 2-1〉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수	29
〈표 2-2〉 연해주 진출 북한회사 리스트(2013년 현재)	30
〈표 2-3〉 북한-러시아 간 노동자 고용에 관한 계약서	31
〈표 2-4〉 연해주의 외국인 거주자 수(2013년 현재)	34
〈표 3-1〉 이주의 유형	51
〈표 3-2〉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현황	59
〈표 3-3〉 블라디보스토크시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상납 금액	64
〈표 3-4〉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 현황(1990~2009년)	72

그림목차

〈그림 1-1〉 광역두만강 개발계획	7
〈그림 1-2〉 연해주 지도	9
〈그림 1-3〉 시베리아 횡단철도	10
〈그림 2-1〉 극동지역 지도	22
〈그림 2-2〉 2013년 기준 북한 건설회사 러시아 진출 현황	33
〈그림 3-1〉 북한 경제구조와 외화벌이 흐름	58
〈그림 3-2〉 러시아 파견 북한 사업소(회사) 내 조직도	61

사진목차

〈사진 1-1〉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미군 행렬	11
〈사진 1-2〉 우스리스크 중국인 시장(소매)	17
〈사진 1-3〉 우스리스크 중국인 시장(도매)	17
〈사진 1-4〉 우스리스크 중국시장 내 야채시장	18
〈사진 2-1〉 북한 여권	27
〈사진 2-2〉 러시아에 입국하는 북한 노동자들(블라디보스토크 공항)	36
〈사진 2-3〉 고려신문 창간호	37
〈사진 2-4〉 러시아에 입국해 공항 밖에 모여 있는 북한 노동자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37
〈사진 2-5〉 프리모리예 호텔과 호텔 앞에 세워진 북한 영사관 자동차	38
〈사진 2-6〉 북한물산전시회 포스터(상)와 전시 중인 자수 작품들(하)	39
〈사진 2-7〉 ㈜남강 북한 노동자들의 숙소(아르츰시)	40
〈사진 2-8〉 한국 선교사가 건설 중인 교회	43
〈사진 2-9〉 자신의 연장을 가지고 옮겨 다니는 노동자들	43
〈사진 2-10〉 건설 현장 안쪽에 있는 노동자들의 숙소와 내부	44
〈사진 2-11〉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46
〈사진 2-12〉 겨울에 발전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일산화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북한 노동자들	47
〈사진 2-13〉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한 교회 전경과 화장실 내부	48
〈사진 3-1〉 인터넷 벼룩시장에 실린 북한 노동자의 구직 광고	69

요 약

- 연해주 지역은 1860년 베이징조약에 의해 청(淸)에서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이후 개발정책의 추진과 함께 수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동북아시아 특히 한·중·러의 경제 협력과 개발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국제노동이주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해외파견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러시아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동시에 북한 내 외교정책과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구조적 경제난을 겪으면서 경제적 기반이 사실상 붕괴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인력 송출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그동안 주민들에 대해 극도로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서는 노동자의 해외파견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며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 정부가 취하고 있는 해외 노동자 파견 정책은 개별 노동자의 선택보다는 국가주도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과의 격리, 계획분 상납의무, 북한 정부소속 관리자들에 의한 노동자 감시체계가 작동된다.
- 국제사회의 보고서들은 북한의 해외 노동력 송출을 인권 및 인신매매 문제와 결부시켜 극도의 부정적 평가로 일관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대다수는 상납금 의무 및 감시체계 등의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비교적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 2007년 이후 연해주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 노동자이며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쿼터를 받아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2013년에는 이미 3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파견되었다.
- 연해주에 파견된 일반 북한 노동자들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연간 수입은 공식 작업장이나 사적 작업장 모두를 포함하여 최대 3,000달러에서 최소 200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건설회사의 대표나 관리인(현장소장 포함) 등은 노동자들로부터 받는 뇌물과 사적 작업장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 등을 합쳐 연간 5만~1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 노동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연해주 내 러시아 업체와 북한 노동자 관리회사 간의 임금 체불도 잦은 것으로 나타난다. 러시아 업체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북한 노동자 관리회사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이나 노동자 관리회사는 체불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절반에 달하는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현지 조직폭력배를 고용하는 등의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의 모국으로의 송금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 허용되는 외화는 최대 1만 달러로 그 이상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결국 북한 노동자들은 귀국하는 관리나 동료 노동자 편으로 수시로 돈을 가족들에게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송출 및 유지 구조를 북한 사회의 시각과 맥락에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은 전적인 강제적 이주라기보다는 표면상으로는 자발적 노동이주로, 심층적으로는 강제와 자발적 선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해외로 파견되기 위해 북한주민들은 관련된 부처의 관리들에게 큰 규모의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데 이것은 초기 송출과정이 자발적 형태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일단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이주를 하게 되면 러시아 내에 소재하는 북한의 사업소 체제에 편입되어 총화와 감시 속에 노동을 하면서 매달 계획분을 채워야 한다. 한편 북한 노동자들은 이 계획분을 일정 정도 채우고 나면 개별적으로 따로 일감을 찾아서 더 노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자발적 가외 노동이 노동자들 수입의 큰 원천이 된다.
 - 둘째,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계획분 혹은 국가 계획분은 계획경제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북한사회의 관점에서 착취라기보다는 의무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 셋째,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체계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지에서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한다.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의 감시체계와 규율망 속에서도 내부인 뿐만 아니라 현지인 및 고려인, 조선족 등의 한인들과도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의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와 비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보기도 한다.
 - 넷째, 러시아에 파견되어 이주노동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귀국 후

신분 상승 혹은 세탁을 통해 다시 러시아에 송출되는 일종의 이주 회로 속에 편입된다. 이 과정에서 뇌물상납과 노동자 착취의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이주의 순환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 현재까지는 러시아 사회에서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한 노동자의 여러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눈감아주고 있지만 앞으로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루어야 하는 사업이 점차 증가하면서 결국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커다란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며 북한 노동자 역시 기존의 방식으로는 국제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켜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사회는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파견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점차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목표

이 연구는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연해주 이주를 둘러싼 국가 간, 정부 간, 기관 간, 행위자 간의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시각 및 인식을 맥락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미래 남북한 통일에 기여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해주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현실적인 문제제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러시아의 이민사 영역이고, 둘째는 러시아에서의 항일운동이며, 셋째는 연해주 지역 한인들의 실태조사이고, 넷째는 농업개발 등을 위한 실용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¹⁾ 최근에는 국내 외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실에 기반하기보다는 이념 혹은 체제 논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의 통일과정에서 필연적인 남북한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연해주는 인력협력과 개발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남한의 기술,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러시아의 토지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된다면 커다란 성과가 가능한 곳이다. 이를 위해 북한과 러시아의 노동력 송출 및 유입관계를 이해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1) 임채완,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북한과 통일에 관한 인식 조사,” 『統一政策研究』, 제12집 2호 (통일연구원, 2003), p. 243.

이를 바탕으로 북한 노동자의 이주를 장려하고 이들의 인권과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노동력을 합하는 남북한 공동출자 방식으로 러시아의 농업, 유통 사업, 에너지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한다면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궁극적으로는 통일 기반 조성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해주 개발에 있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뿐 아니라 연해주 내 한인 커뮤니티와의 교류 활성화처럼 사회문화적 측면의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연구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한국의 국가보안법 등이 북한 노동자들과의 접촉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 노동자들도 노무현 정권 이후에는 더욱 한국인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현지조사 방안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연해주는 중국 조선족, 고려인, 러시아 영주권을 가진 북한인, 한국인들 사이에 교류가 있는 지역이며 경우에 따라선 이들과 북한 노동자들과의 접촉도 이뤄지는 곳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범위를 러시아 영주권을 가진 북한인과 북한 노동자들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광역두만강 개발계획²⁾



연해주 지역은 자연, 사회적 재화가 풍부하며 한민족을 포함한 다민족의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일종의 접경지대라고 할 수 있다.³⁾ 접경지역의 공통점은 모두가 구사회주의권 지역으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개혁과 개방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이 지역들이 갖는 장점, 예를 들어 중국 동북 3성이 지닌 광활한 영토와 극동 연해주의 영토와 자원 그리고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과 함께 한

국과 일본의 자본과 경영기술이 부가된다면, 상당한 정도의 협력과 개발 그리고 장래 동북아의 지역통합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해 동북 3성~몽골 동부~연해주~동해안을 아우르는 유라시아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⁴⁾ 여기에서 연해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개발 계획은 북한의 경제개방을 촉진하는 회유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연해주 내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 노동자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재외동포 기업가, 단체, 그리고 한반도 주변 국가의 북한 협력 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 북한의 경제개방과 통일에 대비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해안 ~ 연해주 韓中공동개발로 北경제개방 앞당긴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정상차원 협력 선언.” 『매일경제』, 2014년 7월 4일.
 3) 심현용, “동북아 ‘접경지대’ 극동연해주와 한민족 다diaspora(Diaspora),” 『한국시베리아연구』, 제4집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0), pp. 113~117.
 4) 앞의 기사.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과정에서는 단순한 문헌조사나 간단한 방문조사에 그치지 않고 연해주 대표적인 북한 노동자 거주지역 및 각 민족 커뮤니티들을 선택하여 2014년 3회에 걸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⁵⁾ 현지조사에는 조사대상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을 비롯하여 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행동의 관찰, 현지 북한 노동자 연구자와의 인터뷰, 다양한 문서자료 및 통계자료의 수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지조사 외에도 러시아 근무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해외송출 북한 노동자들의 일상생활과 노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기본적인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3. 연구지역 개관

가. 연해주 개관

연해주는 면적이 약 16만 5,000km²로 한국의 약 1.6배이며, 인구는 2010년 1월 1일 기준 198만 2,000명이다. 2003년 기준 206만 8,000명이던 인구가 7년 만에 10만 여명으로 감소했다. 80%가 산악 지형이어서 인구의 76%가 도시에 거주하며, 25%가 농촌에 거주한다. 민족 구성을 살펴보면, 인구의 대부분인 89.8%가 러시아인이고, 4.54%의 우크라이나인, 0.86%의 고려인, 0.7%의 타타르인, 0.56%의 벨라루스인, 0.27%의 아르메니아인, 나머지 3.27%는 기타 민족이다.

연해주의 주도(州都)는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이고, 주요 도시

5) 1차는 9월 8일~13일, 2차는 10월 16일~22일, 3차는 11월 10일~20일까지이다.

는 우수리스크(Ussuriysk), 나호트카(Nakhodka), 아르쭘(Aruchom) 등이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종착지이기도 하다. 1860년 이후, 이 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중·남부 지역의 농업, 수공업 종사자, 군인, 망명자 등을 극동 지구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했고 1880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조선소가 건설되었으며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의 이민이 급증했다. 우랄(Ural) 산맥 서쪽 지역에서 연해주로 대거 이주했고 그들 중 일부는 우수리철도 건설에 참여하기도 했다. 1891년에 시작해 1916년에 완공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총 길이가 9,298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이다. 1897년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로프스크(Khabarovsk)’ 구간 철도 772km가 완성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의 관문으로 부상했다.

〈그림 1-2〉 연해주 지도



*출처: 박환 저, 『러시아지역 한인의 삶과 기억의 공간』 (서울: 민속원, 2013); 민속원 <<http://www.minsokwon.com>>.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road)는 과거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정치·군사·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개통은 광대한 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시베리아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그림 1-3〉 시베리아 횡단철도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8830&cid=47312&categoryId=47312>>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1918년 4월에는 일본군과 영국군이 상륙하였고, 6월에는 반 볼셰비키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8월에는 미국군이 상륙하여 극동 지역을 점령하였다. 1920년 10월 일본군의 철수를 선두로 외국 군대가 모두 철수하여 소비에트 정권이 확립되었다. 이후 연해주 지역에는 1932년에 태평양함대 본부가 창설되어 북극해 연안 항구에 물자를 공급하는 보급기지 역할을 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는 1950년대 초 외국 선박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구 소련 시기까지도 외국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기도 하다. 외국 선박의 출입이 허용된 항구는 나호트카항이고 나호트카에는 유일하게 외국 영사관이 있는데 바로 북한 총영사관이다.

〈사진 1-1〉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미군 행렬



*출처: <<http://www.oldvladivostok.ru/photo>>.

나. 한민족의 연해주 진출

1860년 베이징조약에 의해 러시아령이 된 연해주 지역에는 조선과 중국에서 건너온 많은 이주자가 있었다. 조선시대였던 1864년, 함경도 지역의 농민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것이 한민족 최초의 이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조선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에서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짓거나 소작농과 노동자로 이주했다.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해 온 조선인과 중국인은 노동력과 식량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중국인들은 부를 축적하면 대부분 본국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조선에서 이주해 온 조선인들은 연해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현지생활에 적응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연해주 지역에서 어업과 수산업 가공을 하던 일본인들이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면 일본으로 돌아가던 상황에 비해 조선인들은 대조적이었다.⁶⁾

1876년 블라디보스토크 거주 한인은 약 35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불과 10년 만에 1,000명이 넘었다.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은 1896년부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 시작해 1905년경에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수가 2만여 명에 달했다. 1886년 최초의 한인학교가 설립된 이래 1897년에는 19개, 1916년에는 46개의 한인학교가 설립돼 재학생이 2만 5,000명에 달했다.

1864년부터 조선지역에서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은 1937년 가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될 때까지 17만 2,000명에 달했다.⁷⁾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들은 거주지 이전 제한을 받았으나, 1956년 후루시초프가 거주지 이주 제한을 철폐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했으며, 일부는 연해주로 다시 이주해왔다. 연해주 지역으로 한인의 이주가 본격화된 것은 소련 붕괴 이후이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각국이 자민족 중심의 차별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한인들 일부가 선조의 터전인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소련 시대의 연해주 지역은 태평양함대 본부가 있던 곳으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높은 임금과 각종 보조금으로 우랄 산맥 서쪽 지역에서 동쪽으로 국내 이주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1926년 160만 명이었던 인구가 1991년에는 810만 명으로 증가했다.⁸⁾ 그러나 소련 붕괴 후 러시아 중앙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많은 러시아계 주민이 극동 지역을 떠났으며, 대신 러시아 이외의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 중국, 동남아

6) 심현용, “동북아 ‘접경지대’ 극동연해주와 한민족 다이나스포라(Diaspora),” pp. 125~126.

7) 赤羽, ワシリエハ編, 『国境を越える人々』(国際書院, 2006), p. 43.

8) 위의 책.

에서 노동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2004년 아르츨시 시장에 의하면, 소련 붕괴 직후 항구가 있던 연해주 지역에 해외투자가 이뤄져 제조업과 봉제공장, 농장 등이 설립됐다. 이렇게 설립된 공장에서는 한인, 즉 고려인을 비롯한 현지 러시아인과 해외에서 이주해온 중국인, 베트남 노동자가 일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이 있는 아르츨시에만 11개에 달하는 여러 종류의 봉제공장이 설립되었고, 연해주 전체에는 22개의 공장이 가동되었다. 한국에서 투자해 설립한 봉제공장의 제품은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됐다. 그러나 러시아인의 임금인상 요구와 사회주의 체제의 산물로 공장에 출근은 하지만 일을 하지 않아 생기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공장을 다른 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이 지역에 공장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연해주 지역은 민족주의(nationalism)로 배척당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피난지이기도 하다. 특히 이 지역은 100여 년 전부터 한인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지역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일반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해서 이 지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였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독립 운동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기도 하였고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해주 지역에 부족한 노동력을 북한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 100여 년 전에도 연해주 지역에서의 중국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조선인 노동자를 선호했던 것처럼 현재에도 연해주 지역에서는 중국 자본과 노동력의 유입을 꺼리고 있다.

4. 연해주 코리언 사회의 형성과 북한 노동자

연해주 지역에는 많은 코리언⁹⁾이 거주하고 있다. 모국도 아닌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 모여 있다는 것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현상일 것이다. 연해주 코리언은 한민족(韓民族)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 경험으로 커뮤니티 또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 독특한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자는 1992년 12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서 고려인을 처음 만난 이후부터 연해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외국인이 연해주 지역을 방문하는 건 불가능하였다. 이후 1995년 3월 일본 교토시 환동해안 아카데미 포럼 멤버들과 함께 처음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일주일 정도 방문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당시 소련시대부터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과 1992년부터 시작된 타지키스탄 분쟁으로 연해주 지역으로 피난해 온 타지키스탄 고려인을 만날 수 있었다. 1995년경부터 중앙아시아 각국들이 자민족 중심 정책을 취하면서 고려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연구 범위를 확대해서 연해주로 이주한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조사하기 위해 연해주를 방문했다가 연해주의 다양한 코리언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됐고 북한

9) ‘코리언’은 ‘해외 코리언(Overseas Korean 혹은 Korean Abroad)’을 줄여 쓴 말이다. 물론 한국어에 ‘해외동포’, ‘재외한인’이라는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이 포함된 이주 연구자들 입장에서 ‘동포’라는 표현에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한인’의 경우 일본에서는 전쟁 전에 일본에 건너온 올드 커머(old comer)와 구분지어 전후에 건너온 뉴 커머(new comer)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본문에서 ‘코리언’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유학생, 나아가서는 탈북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반도 출신자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아사쿠라 도시오, “들어가며,” 아사쿠라 도시오·오타 심페이 엮음, 『한민족 해외동포의 현주소: 당사자와 일본 연구자의 목소리』 (서울: 학연문화사, 2012), p. 7).

노동자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연해주 코리언은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 온 디아스포라의 재집합 현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스라엘의 경우와 달리 모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다.

소련시대 군사적 요충지였던 관계로 외국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연해주에는 소련 붕괴 후 다양한 코리언이 이주해 살고 있다. 연해주 코리안 사회의 특징은 다문화, 다국적 코리언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환경과 체제, 문화가 다른 사회에서 거주하던 코리언이 각자의 커뮤니티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으며 문화, 언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협력하거나 교류하지는 않는다.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커뮤니티 간에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내재해 있다.

- ① 소련붕괴 이전부터 거주해 온 고려인
- ② 소련 붕괴 후 각 공화국에서 이주해 온 고려인
- ③ 사할린 출신 한인
- ④ 북한 국적을 가진 러시아 영주권자
- ⑤ 중국 국적 조선족
- ⑥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
- ⑦ 탈북자
- ⑧ 한국인
- ⑨ 한국계 미국인

연해주에 있는 코리언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연해

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열람도 어렵지만 정부가 파악한 숫자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다국적이기 때문에 코리언이라는 카테고리도 합산하기도 어렵다. 국적에 따라 코리언의 수를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다. 조선족은 중국인이지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면 러시아인이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선교사로 입국해서 선교 활동을 위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코리언, 한국인이면서 사업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코리언 등도 있다. 연해주 지역의 북한 노동자 역시 그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며 입수한 자료조차 확인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10년간 연해주 지역을 조사하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미루어 근사치에 가깝다고 생각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현지 다문화, 다국적 코리언 중 가장 먼저 조사한 대상은 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 각국의 자민족 중심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연해주로 이주했으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들이다. 연구자는 이들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의 실상을 조사하면서 1945년부터 러시아 지역에 살면서 러시아 영주권을 가진 북한인들에 관해 알게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했다.

두 번째는 소련 붕괴 직전부터 생필품이 부족한 연해주 지역에 생필품을 가지고 들어온 조선족 보따리 장사나 도매업자, 야채 재배를 해서 시장에 내다파는 조선족 조사였다. 연해주 우스리스크시에 있는 중국시장에서는 매일 밤 11시경이 되면 도매시장이 열린다. 낮에는 소매시장, 밤에는 도매시장이 되어 연해주 뿐 아니라 극동지역과 사할린 지역 장사꾼들이 물건을 구입하러 온다. 그리고 조선족들은 중·러 국경지역에서 직접 야채를 재배하여 시장에서 도·소매로 판매하고 있다.

〈사진 1-2〉 우스리스크 중국인 시장(소매)



〈사진 1-3〉 우스리스크 중국인 시장(도매)



〈사진 1-4〉 우스리스크 중국시장 내 야채시장



이처럼 고려인이나 심지어는 조선족까지도 조사한 경험이 있지만 시장이나 건설 공사장에서 자주 마주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선 조사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2014년 8월, 통일연구원에 연구를 신청했고 지원이 결정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를 조사할 수 있었다. 이애리아가 2014년 9월과 11월, 이창호가 2014년 10월에 연해주를 방문, 총 3번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본 보고서에 등장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은 신분 보호를 위해 모두가명으로 처리했으며, 수록된 사진들은 출처표기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임을 밝힌다.

II.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 파견의 역사와 현황

1. 연해주로의 북한 노동자 파견

한민족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은 구한말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때 진출한 코리언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옮겨갔다. 이후 극동지역이 한인들의 독립운동 근거지로 활용되면서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정치적 이유로 이주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자가 처음 러시아에 파견된 것은 1945년 구소련의 북한 점령 직후였다. 구소련 정부는 청년 실업자 가운데에서 극동 및 마가단 지역으로 보낼 북한 노동자를 모집했고, 당시 모집 조건은 현지인보다 70% 비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1945~1950년대 초 : 구소련 극동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구소련 요청에 따른 파견
- ② 1967~1990년대 초 : 북한과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한 구소련의 정책적 북한 노동자 초청
- ③ 1990년대 중반~2007년 : 구소련 붕괴 후 북·러관계 악화로 노동자 파견 정체
- ④ 2007년~현재 : 극동지역 및 러시아 전역 북한 노동자 파견 확산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초까지 북한 당국은 실업자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노동자 파견에 적극적이었다.¹⁰⁾ 1947~1949년에는 구소

10) БЕЗИК И.В., “КОРЕЙСКАЯ РАБОЧАЯ СИЛА НА СОВЕТ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1950-Е ГГ.),”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4), 2003, p. 63.

련에서 북한으로 파견된 관리가 노동자를 모집해 데려갔다. 2만 명 정도로 알려진 북한 출신 노동자들 중에는 독신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가족단위로 온 노동자들도 있었다. 당시 구소련 극동지역으로 향한 2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의 가족은 5,000명에 달했다.¹¹⁾ 1950년대 초까지 구소련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하바로프스크나 사할린, 마가단 지역 등 외딴 지역에서 수산업, 임업, 목재 가공 및 도로공사와 활주로 건설 등에 종사했다. 파견 노동자들 중 범법자나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벌이다 끌려온 정치범 출신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한편 현지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구소련 당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려 시도했지만 상당수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거나 러시아인 또는 고려인 과부들과 동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환을 피했다고 한다. 이처럼 파견 노동자들로 인한 말썽이 심해지자 구소련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이에 따라 일반 노동자들이 파견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는 국군 포로들을 극동지역 우라늄 광산으로 보내기도 했다. 1947년부터 북한 노동자들의 통역을 위해 중앙아시아 고려인 300여 명이 극동지역으로 동원되기도 했다.¹²⁾

11) 이애리아, “연해주 지역에서 고투하는 다국적·다문화 한인들,” 아사쿠라 도시오·오타 심페이 엮음, 『한민족 해외동포의 현주소: 당사자와 일본 연구자의 목소리』 (서울: 학연문화사, 2012), p. 204.

12) БЕЗИК И.В., “КОРЕЙСКАЯ РАБОЧАЯ СИЛА НА СОВЕТ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1950-Е ГГ.),” p. 68.

〈그림 2-1〉 극동지역 지도



*출처: <<http://politicstory.tistory.com/808>>.

북한 당국은 극동지역의 척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겠다는 지원자가 없자 초창기에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구소련 정부가 이에 반발하자 북한은 지식인들을 강제로 극동 지역에 보내기도 했다. 구소련 극동의 노동자로 지원한 북한 주민 가운데에는 연해주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할 때 북한 지역으로 도망 온 고려인들이었다. 연해주로 다시 나온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수가 구소련 국적을 취득했다. 구소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으로의 귀국을 피하기 위해 노동 계약 연장을 시도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야 일부가 북한으로 돌아갔다. 당시 북한 노동자들은 가족 당 10~25만 루블정도(당시 환율1\$=4루블)의 많은 돈을 벌며 귀국했다고 한다.¹³⁾

한국전쟁이 끝난 뒤 10여 년 동안 북한 노동자들의 파견은 소강상태였다. 북한의 전후복구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구소련은 18~32세의 젊은 중국 노동자 300만 명을 고용하는 문제를 중국 당국과 협의했지만 합의되지 못했다. 구소련은 중국 노동자들을 극동지역 북쪽 지방의 벌목작업에 투입하려 한데 반해 중국은 노동자 관리 문제를 내세워 국경 인접 지역에 배치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중소국경분쟁 가능성을 우려한 구소련 내무부의 입장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1957년 북한 정부는 구소련 정부에 연해주에 파견된 북한인들의 송환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1만 5,000여명의 노동자가 귀국했다. 이때 돌아가지 않은 노동자들은 영주권만 취득한 채 북한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¹⁴⁾ 이들은 구소련 시절 북한을 수시로 왕래하면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았고 현지 북한 영사관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이 때 소련군에 포로가 된 일본인 1만 314명도 북한으로 보내졌다.¹⁵⁾

북한은 1959년부터 부족한 노동력 보충을 위해 재일교포 복송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 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구소련에 노동자 파견을 다시 추진했다. 이에 따라 1966년 5월, 구소련 브레즈네프 서기장과 김일성 수상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 벌목 노동자 파견에 합의했고 하바로프스크 지역에 1만 5,000여 명이 파견됐다. 1967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구소련 정부가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들과 밀

13) 이애리아, “연해주 지역에서 고투하는 다국적·다문화 한인들,” pp. 204~205.

14) 위의 글, pp. 195~196.

15) БЕЗИК И.В., “КОРЕЙСКАЯ РАБОЧАЯ СИЛА НА СОВЕТ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1950-Е ГГ.),” p. 65.

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 벌목공의 송출을 요청한 시기이다. 당시 북한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발생한 잉여 노동력을 활용해 외화를 벌어들여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등의 목적에서 구소련의 요청을 수용했다.¹⁶⁾

그 뒤 1975년과 1977년, 1985년에 북한과 구소련은 노동영역 확대에 합의했으며 깊은 산속에서 구소련이 제공한 장비로 벌목하는 작업방식이 시작됐다.¹⁷⁾ 파견노동자들이 구소련의 수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우려한 북한이 일반 소련인들과 북한 노동자들이 분리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 따른 일이었다.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법이 아닌 북한법을 준수하며 소련인과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생활해야 했다. 파견기간도 3년으로 제한했다. 노동자들은 힘들게 생활해야 했지만 파견기간이 끝나고 귀국할 때는 가전제품과 생필품을 다량 가지고 갈 수 있어서 귀국한 뒤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러시아에 파견되기 위해 뇌물까지 써가며 노력하고 있다.

1984년 5월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때 양국은 극동지역 북한 노동자 수를 2만~3만 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월급도 북한 화폐가 아닌 루블로 지급하며 임금수준은 100루블(당시 환율로 미화 약 100 달러)이었다. 당시 파견될 수 있는 사람은 노동당원으로서 성분이 좋아야 했으며 기혼자에 러시아어를 할 줄 몰라야 했다. 이처럼 엄격한 조건이 붙었음에도 1980년~1990년대 초 벌목 노동자들의 탈출이 빈번해졌다. 이들은 고려인들의 도움으로 러시아에 숨어 살거나 한국으로 갔지만 북한이나 구소련, 러시아 당국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16) 이영형,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2호 (서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p. 68.

17) 라리사 자바로프스카야 교수와의 인터뷰.

2. 소련 붕괴 후의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변화 (1990년대 중반~2007년)

1992년부터 2007년까지는 구소련이 붕괴된 뒤 러시아가 탄생하고, 북·러 관계가 좋지 않아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이 감소했던 시기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발생한 뒤 1990년대 말부터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에 송출되고 싶어 했다. 1992~2003년 송출된 북한 노동자들은 극동 지역뿐 아니라 연해주와 사할린까지 파견됐고, 별목현장과 건설현장, 농업현장에서 일했다. 북한 당국은 1980년대 구소련에 파견됐던 별목 노동자가 도주하는 사고가 빈번했던 사실을 감안해 파견된 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러시아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을 노동자 관리를 맡은 현지의 북한 지사 계좌로 입금하게 했고, 노동자들이 귀국해 고향에 돌아갈 때 지급하도록 했다.

1990년대 말 북한 노동자는 1만 명 정도였는데, 3개월 단기 노동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 1995~1999년 나호트카 주재 북한 영사관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북한을 돕는다는 명목 하에 노동자 1명 당 월 200달러의 충성기금을 징수했고, 당시 북한 영사관의 한 달 수입은 20만 달러를 웃돌았다. 이 자금으로 중국에서 식량을 구입하고 러시아에서는 석탄과 중유 등을 구입하여 북한으로 보냈다. 1996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체류가 증가하자 러시아 정부는 북한 주민의 무비자 입국 혜택을 없앴다.¹⁸⁾ 북한 당국은 외화 획득을 위해 가능한 많은 노동자를 구소련에 파견하고자 했지만 1998년부터 러시아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북한 당국의 희

18) 이영형,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p. 59.

망대로 이뤄지지지는 못했다.¹⁹⁾

1990년대 말부터 파견된 노동자들은 탈북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었다. 계약된 노동 외에 가외노동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깊은 산속에서 격리된 채 생활하는 별목장 노동 이외에도 러시아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러시아 회사와 계약한 북한 노동자 관리회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생활했다. 그러나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가외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됐고 심지어는 관리회사의 관리자와 합의 아래 정해진 작업장에서 이탈해 개인적으로 돈을 벌고 계약기간 안에 회사로 복귀하는 노동자들도 생겨났다.

한편 러시아는 1997년 이주법을 개정하면서 북한인들의 러시아 입국을 어렵게 만들었다. 여권과 비자, 초청장이 없는 북한인들은 입국이 불가능해졌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들도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했다. 동시에 러시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극동지역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 모두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이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일거리를 찾아나섰고 이를 위해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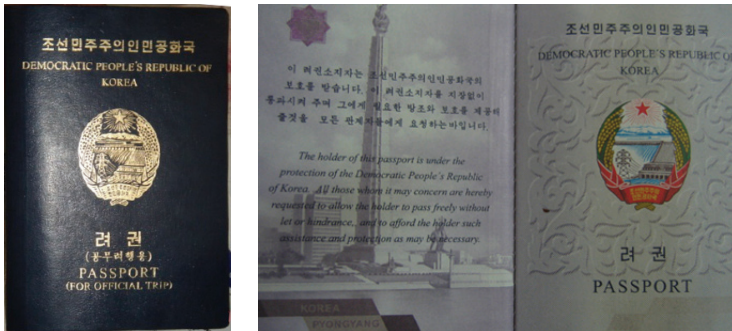
북·러관계가 소원했던 시기를 지나 2000년 북·러정상회담 개최로 일정하게 궤도에 오른 뒤 양국은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공식 등록된 북한 노동자는 농업 부문에 1만 명, 건설 부문에 2,000명 정도였고,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하바로프스크주와 아무르주 지역에 1만 5,000명의 별목공이 등록되어 있었다.²⁰⁾

19) 이애리아, “연해주 지역에서 고투하는 다국적·다문화 한인들,” pp. 196~197, 207.

20) 이영형,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53.

양국은 2000년 10월 열린 양국 간 제3차 경제통상협력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석탄·목재·경공업·교통 분야 등에 대한 협력 문제가 논의됐고, 러시아 아무르주와 북한 간 부레이스까야 수력발전소 부지 준비 작업에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문제와 건설부문에서 북한의 전문가와 노동자를 이용하는 문제 등에 합의했다.²¹⁾

〈사진 2-1〉 북한 여권



*출처: <www.korea-press-production.com>.

3. 최근의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2007년~현재)

가. 북한-러시아의 계약관계와 수입금

2004~2005년 이뤄진 일련의 정부 간 접촉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경제지원 차원의 협력을 희망했고, 러시아는 북한에 노동력 제공 차원의 협력 등을 요청했다. 2007년 3월, 한동안 중단됐던 북·러 간 경제통상협력위원회가 재개됐으며, 여기에서 러시아의 북한 노동력 확대

21) 이영형,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p. 56.

이용 방안 문제 등이 논의됐다. 현지 노동자가 부족한 러시아는 중국 노동자의 지나친 진출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북한의 노동력 유입을 선호했다.²²⁾ 이에 따라 2007년을 전후한 시기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북한의 노동자는 3만 명을 넘었다.²³⁾

2007년 이후 연해주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 노동자다. 2010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서부 건설현장에 북한 노동자가 유입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북한은 러시아에 3만 명, 중동에 1만 5천 명, 아프리카와 중국·몽골에 각 8,000명, 동남아에 5,000명, 동구권에 5,000명 등 총 7만 명(2006년의 2배 수준)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해 연간 1천억 엔(10억 달러) 수준의 외화 수입을 거두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²⁴⁾ 북한은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등에 수십 개의 기업을 진출시키면서 러시아의 극동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주로 건설, 농업, 요식업, 자동차 정비업 등의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²⁵⁾ 러시아가 제공하는 쿼터에 맞춰 파견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정확한 파견 노동자 수는 알기 어려웠다. 2014년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 쿼터는 4,700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2014년 8월 현재 연해주 이민국에 등록된 북한 노동자 수는 7,336명이고 연해주 지역의 모든 외국인 쿼터는 2만 3,616명이지만 등록된 외국인은 2만 6,000명이다. 북한 노동자는 물론 외국인 전체가 정해

22) 이영형,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p. 50.

23) 이영형,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p. 57.

24) 『주니치신문』, 2011년 6월 1일.

25) 이영형,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p. 57.

진 쿼터보다 등록된 외국인수가 더 많다(부록 참조). 그러나 2012년 10월 4일 북·러 노동자 파견 MOU 체결 당시 북한이 요구한 쿼터는 3만 3,000명이었으며 한 계약서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 안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가 2013년에 3만 2,85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2013년에는 이미 3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파견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 북한 노동자는 5년 계약으로 입국이 가능하고 비자 만료 6개월 전에 1년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비자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출국하도록 되어 있다.

〈표 2-1〉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수

연도	러시아의 북한노동자 수
2011년(2011. 3. 30)	32,000명
2012년	45,000명
2014년	53,000명

*출처: Газет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보도.

러시아 당국은 쿼터 1인당 수수료로 650달러를 받는다. 북한 각 기관에서 러시아 현지 파트너를 찾아 노동자 파견 계약을 하고 초청장을 받아 비자를 받은 뒤 입국시키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아래 〈표 2-2〉와 같이 파견 노동자들은 소속 기관이 제각각이다.

〈표 2-2〉 연해주 진출 북한회사 리스트(2013년 현재)

번호	회사명	책임자	비고
1	릉라도 대외무역총회사-블라디	신용호	
2	조선아연 총회사	순경호	
3	조선 해외건설총회사-젠코	유용남	
4	조선 기술 무역 회사(청계천)	안호찬	
5	〈철산〉 무역총회사	황선일	
6	조선육해운성 극동운수 총회사	김영철	원양해운
7	조선 대외 무역회사(룡성)	김일중	
8	젠코 하산지사	임춘추	
9	〈남강〉	강현민	북한보위부
10	대외건설사업소 〈성공〉	장춘헌	
11	임업성 〈원동임업〉 총국	정철	
12	대외무역 총회사 〈낙원〉	임호상	
13	조선과학회사	황대식	
14	조선석유 총회사	이봉혁	
15	조선흑색금속수출입회사	김인학	
16	조선 수산성	유용수	
17	기술발전회사	홍영선	
18	조선경제회사 〈룡흥〉	지상준	
19	조선성산경제무역연합회사 〈성산〉	강철민	
20	〈청송〉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북한 노동자의 조건은 2007년 8월 31일에 체결된 러시아와 북한 간 노동자 고용에 관한 계약서 전문(부록 참조)을 보면 알 수 있다. 전문 제3조에 파견노동자는 18세 이상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이나, 약물 중독, 전염병이 없다는 의료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7조에는 산재와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국적국(북한)의 법률적용을 받으며 휴일도 러시아가 아닌 북한의 휴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제10조에는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사망할 경우 고용주는 3일 이내에 북한 영사관에 통보하고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북한으로의 운구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사망자의 사유재산은 북한으로 돌려주고 사망자의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제11조는 러시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루블을 달러로 바꾸거나 달러를 루블로 바꿀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래 <표 2-3>이 계약서 전문이다.

<표 2-3> 북한-러시아 간 노동자 고용에 관한 계약서

- (주) RAY STORY - 계약자 - 주광명 대표
 (주) 젠코 해외건설 - 고용주 - 강철선 대표 - 노동자를 공급하는 회사
- 계약 기간 - 5년
 - 계약자 의무: 숙련 노동자 공급 +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 제공
 - 계약자 의무: 1) 필요한 노동자 숫자 고용주에게 사전 고지
 2) 노동자 고용 관련 서류 준비
 - 계약 변경 및 해지
 - 문제 해결: 계약서에 따른 해결이 안 될 경우 법원에서 해결
 - 러시아어 계약서와 북한어 계약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짐.
- (주) 성공-강현문 대표
 (주) (젠코) 해외건설 고용주 - 강철선 대표 - 노동자를 공급하는 회사
- 계약기간 - 5년
 - 고용주 의무: 숙련 노동자 공급 +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 제공
 - 계약자 의무: 1) 필요한 노동자 숫자 고용주에게 사전 고지
 2) 노동자 고용 서류 준비
 - 문제 해결: 계약서에 따른 해결이 안 될 경우 법원에서 해결
 - 러시아어 계약서와 북한어 계약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짐.

러시아 연방 연금 펀드 _ 연해주 아르츰시 씨코토프 지역
 2011년 12월 3일 연방법이 변경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은 연금을 납부 해야함(높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 제외).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험료 면제하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러시아 연방 정부와 북한 정부 간 양국 시민의 임시 고용에 대한 계약서

- 노동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 약물중독, 전염병이 없다는 의료확인서가 있어야 함.
 - 노동자 휴일은 국적국가 공휴일에 맞추며 고용계약에 휴일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야 함.
 - 의료서비스
 - 의료봉사자에 관한 계약 규정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음.
 - 러시아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고, 중독, 부상, 출산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급성 질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
 - 여타 의료서비스는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법률과 국제 계약에 따라 제공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노동자가 직접 부담할 수 있음.
 - 노동자 사망 시 고용주는 운구비용을 부담하며 사망노동자의 사유재산을 북한으로 보내야 하고 노동자 가족에게 위로금(보상금)을 지불해야 함.
 - 노동자 사망 시 계약자는 사망시점을 기점으로 3일 이내에 주러북한대사관(영사관)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함.
 계약자는 노동자 소속기관에 사망증명서(사망사실통보)를 제출해야 함.
 - 노동자는 체류국가 법률에 따라 외화를 구입할 수 있으며 체류국가 법률에 따라 구입한 외화를 귀국 시 가져갈 수 있음.
 - 노동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1997년 9월 26일에 러시아 연방정부와 북한 정부가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체결한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 협약에 따름.
 - 노동자는 비자 만료 시 출국해야 함.
-
- 계약서 - 계약 기간은 5년이며 5년 뒤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됨.
 해지할 경우 계약 쌍방이 상대에게 6개월 전에 알려야 함.
 - 계약서 작성 러시아 모스크바 - 2007년 8월 31일

북한 노동자들은 총 소득의 13%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 13% 가운데 65%는 시에서, 35%는 주와 국가에서 징수한다. 소득세 외에 사회보험료도 내야 한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일반 북한 건설노동자의 연간 수입은 공식 작업장이나 사적 작업장 어느 곳에서 일하는지와 상관없이 최대 3,000달러에서 최소 200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건설회사의 대표나 관리인(현장소장 포함) 등은 노동자들로부터 받는 뇌물과 사적 작업장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 등을 합쳐 연간 5만~10만 달러에 달한다. 이들은 현지에서 고급차의 대명사로 꼽히는 토요다 ‘랜드크루저’(중고차가 약 6만~7만 달러)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흔하다.

〈그림 2-2〉 2013년 기준 북한 건설회사 러시아 진출 현황



한편 임금 체불도 잦은 것으로 나타난다. 러시아 업체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북한 노동자 관리회사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

지 못하는 것이다. 일례로 2010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개최지인 루스키 섬 공사를 하는 러시아 건설회사(크로커스)와 계약한 북한 노동자 관리회사는 노동자 300명을 투입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이듬해 철수했다. 이런 경우 노동자들은 소속회사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1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 노동자들이나 노동자 관리회사는 체불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현지 마피아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가 받아야 할 임금의 절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4〉 연해주의 외국인 거주자 수(2013년 현재)

(단위: 명)

국가/국적	출입국 사무소 등록	기타									
		영 주 권	일시적 거주/ 거주기간 허용자	체류	목표 항목 포함						
					개인	사업	관광	유학	취업	인도 주의적	기타
중국	17,531	118	9	17,404	287	5,178	5,107	759	6,003	62	8
북한	4,778	3	1	4,774	53	15	11	30	4,524	-	141
대한민국	1,170	170	40	960	37	262	417	106	109	25	4
몰도바	363	19	49	295	247	10	2	3	33	-	-
미국	244	15	2	227	24	42	48	17	13	83	-
타지키스탄	3,539	53	404	3,082	2,226	102	1	51	702	-	-
터키	373	3	-	370	34	100	7	-	229	-	-
우즈베키스탄	39,811	370	2,277	37,164	29,564	1,576	38	52	5,925	1	8
우크라이나	2,582	225	358	1,999	1,054	52	7	14	871	-	1
일본	365	5	2	358	33	65	152	75	19	10	4
기타 국가	1,251	57	40	1,154	194	371	346	55	146	38	4
무국적자	280	103	76	101	74	21	5	-	-		1

*출처: Газет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보도.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인은 물론 한국인과의 접촉이 금지돼 있다. 현장소장과 통역만이 외부인을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원이 토요일 저녁에 소속 회사 기숙사에서 열리는 총화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현지조사 도중 만난 한 나이 많은 북한 노동자에게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왜 나오느냐”고 묻자 “북한에선 1달러도 손에 짚 수 없지만 이곳에 오면 단 10달러, 100달러라도 집에 보낼 수가 있다”고 답했다. 이 말을 들으며 인권탄압을 이유로 파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이들의 인권회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나. 북한 노동자의 체류 및 노동 과정

(1) 입국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은 비행기 또는 열차가 이용된다. 이 교통비는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입국 또는 출국 모두 우스리스크 역이나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을 경유한다.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을 경유할 때는 목요일 저녁에 도착해 공항에서 밤을 새우고 금요일 오후 2시 45분 비행기로 귀국한다. 열차로 귀국하는 노동자들은 공항에서 우스리스크역으로 이동해 역에서 5시간에서 30시간을 기다렸다가 하산으로 출발한다.

〈사진 2-2〉 러시아에 입국하는 북한 노동자들(블라디보스토크 공항)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는 매주 월, 금요일에 고려항공 비행기가 도착한다. 공항에 도착하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짐 찾는 구역까지 들어가 보니 평상복, 양복, 와이셔츠와 바지 차림 등 다양한 옷차림의 노동자들이 있었다. 짐도 트렁크, 비닐가방 등 형편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노동자들은 모두 김일성 또는 김일성과 김정일 얼굴이 새겨진 배지를 달고 있었다.

북한 노동자들은 역이나 공항에서 한국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신문, 잡지 등을 보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한국어로 출간되는 고려신문도 한국소식이 실려 있어 읽지 못하게 한다.

〈사진 2-3〉 고려신문 창간호



노동자들은 공항 청사에서 각자 소속된 관리회사로 담당자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북한에서 고위관리가 도착하는 경우 관리를 먼저 숙소로 안내한다. 노동자들은 그 뒤에야 소속된 회사에서 차량에 태워 데려간다.

〈사진 2-4〉 러시아에 입국해 공항밖에 모여 있는 북한 노동자들(블라디보스토크 공항)



근래에 북한 관리들은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프리모리에 호텔에 주로 묵고 있었다. 하루 호텔요금이 130~150달러 정도의 규모가 작은 호텔이다.

〈사진 2-5〉 프리모리에 호텔과 호텔 앞에 세워진 북한 영사관 자동차



(2) 체류 및 노동과정

모 국가 총영사관 정보담당 영사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야채재배 농장, 건설현장 등지에서 일한다. 건설현장에서는 벽돌공사와 시멘트 타설, 도장공사 등의 작업에 투입된다. 건설 노동자 외에 가장 많은 북한인들의 일터는 식당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대표적인 북한 식당인 평양레스토랑은 점심에는 식사만 제공하고 저녁에는 다른 국가의 북한 레스토랑과 마찬가지로 공연도 한다. 레스토랑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분점을 열

기도 한다. 현재는 ‘모란봉’과 ‘금강산’이 평양레스토랑의 자매 레스토랑이다. 요리사는 모두 평양레스토랑 출신이다. 최근 공항이 있는 아르츨시에 레스토랑을 열기 위해 북한 영사관측이 시 국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평양레스토랑은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출입하고 있었고 가까이 있는 일본 영사관 사람들도 자주 드나든다고 했다. 이 레스토랑의 지배인은 여성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북한 물산전 등을 열어 외화벌이에 나서는 노동자들도 있다.

〈사진 2-6〉 북한물산전시회 포스터(상)와 전시 중인 자수 작품들(하)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을 출발할 때 교통비와 비자 수수료, 기숙사 식비 등의 명목으로 이미 1,000달러 정도의 빚을 안게 된다고 한다. 또 매달 국가에 내야하는 계획분이 2005년까지 130달러였고, 2011년부터는 3만 루블(당시 환율로 1,00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결국 러시아에 도착해 처음 몇 달간은 출발할 때 진 빚을 갚는데 매달린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숙련노동자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선임자들에게 일을 배워 작업에 투입되는 비숙련노동자들이다. 북한 노동자들 역시 별 기술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단순 업무를 선호한다고 한다.

〈사진 2-7〉 (주)남강 북한 노동자들의 숙소(아르츨시)



북한 노동자들이 자기가 소속된 회사에 매달 입금해야 하는 계획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1995~1997년경 북한에서 아사자가 대량 발생했을 때 총영사관에서 동포를 돕자는 취지로 노동자들에게 1인당 200달러씩 ‘충성금’이라는 명목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당시 연해주에서만 매달 20만 달러가 모였다고 한다. 이 돈으로 중국에서 식량을 구입하거나 러시아에서 중유와 석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보냈는데 아마도 이것이 계획분의 시초였을 것이다.

이 계획분은 2005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2009년에는 월 300달러 정도였고 2011년 탈북한 건설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3만 루블(1,000달러, 1달러=30루블 기준)에 달했다고 한다. 이 노동자는 자기가 소대장으로 20여 명의 노동자를 데리고 일할 때는 계획분을 납부하고도 최고 월 3,000~5,000달러 가량을 벌었던 적도 있었다고 했다.

계획분 금액은 회사마다 다르고 납부하는 방식도 제각각인 듯하다. 겨울에 일거리가 없는 회사는 3월부터 10월까지의 많이 납부하게 하고 11월부터 2월까지의 적게 내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다. 매달 한차례 내도록 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매주 총화 때마다 내도록 하는 회사도 있었다. 총화 때 계획분 납부를 완수한 노동자들의 이름을 불러 줌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노동자들은 번 돈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이 때문에 러시아 강도나 동료 노동자들에게 강탈당하기도 한다. 연해주에서 탈출한 노동자는 돈을 여러 곳에 파묻어 놓고 관리했다고 증언했으며 다른 탈북 노동자는 작업도구 가방에 돈을 넣고 다녔다고 한다.

2014년 11월 한국인 선교사의 교회 건설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 소

대장은 화가 출신이었으나 건축학교에서 건축을 배워 연해주로 나온 사람이었다. 북한에서 치아를 모두 빼고 틀니를 하고 나왔는데 음식 쓰레기와 함께 틀니를 버려서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잠들기 위해 조금씩 마시던 술이 늘어 지금은 낮에도 술을 마셔야 하는 알코올 중독 상태라고 했다. 자녀 결혼식에도 가지 못하고 손자도 보러가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하소연했다. 차가 없어 무거운 연장을 들고 먼 곳의 일터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던 그는 딸과 사위 사진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기도 했다. 딸이 10월에 결혼했는데 결혼 비용만 보내고 가보지 못했다면서 그래도 사위가 노동당원이라며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인 선교사는 술만 먹고 일도 안하면서 일당만 많이 받아가는 이 초대장이 알밋다고 증언했다.

아래 사진들이 교회 건설 현장이다. 가정집을 교회로 개축하고 있는데 집 뒤의 창고를 노동자 숙소로 쓰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한인 선교사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총괄하는 현지 고려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다.

한국인 가정집을 짓는 공사현장에서도 북한 노동자 세 사람을 만났다. 1998년부터 연해주로 나와 일한다는 한 노동자는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고 공사 현장에서 자면서 일하고 있었다. 다른 노동자는 7년 이상 기다린 끝에 연해주에 나온 사람으로 연간 1만 달러 이상을 나라에 바치지만 집에는 1,000달러도 보내기 힘들다며 이곳에 나와서야 북한 사회의 모순을 깨달았다고 불평했다. 그는 북한 당국을 지나칠 정도로 비판해 다른 노동자들이 밀고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7년 동안 여기저기서 사기를 당하며 겨우 연해주로 나올 수 있었던 늙은 노동자가 세간을 팔아가며 돈을 구해다 준 아내에게 미안

하다며 눈물짓는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사진 2-8〉 한국 선교사가 건설 중인 교회



〈사진 2-9〉 자신의 연장을 가지고 옮겨 다니는 노동자들



이 노동자는 2,000달러를 집에 남겨주는 것이 소원이라고도 했다. 연해주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동료 노동자들이 20~30달러씩을 모아 2,000달러를 준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0달러 가운데 1,000달러를 현지 장례비로 쓴다는 것

을 알고는 1,000달러 때문에 죽을 수는 없다고 푸념했다. 이런 사람에게 인권 탄압을 이유로 일자리를 뺏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2-10〉 건설 현장 안쪽에 있는 노동자들의 숙소와 내부



북한 노동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뒤에 저녁 5시부터 밤 12시까지 추가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생대(올해 처음 파견된 노동자)와 구대(1년 이상 된 노동자)가 함께 움직이는데 일당으로 돈을 받지 않고 전체 일감의 가격을 정한 뒤 많은 노동자들이 투입돼 작업을 빠르게 끝내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2013년 당시 일당은 2,300루블이었는데 2014년 11월에는 최대 5,500루블까지 받는 노동자도 있었다.

노동자들은 기숙사에서 작업장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작업장에서 숙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작업장에 물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 제대로 씻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전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중 난로나 발전기를 켜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러시아 현지 언론에 북한 노동자가 건축 현장에서 난로를 켜놓고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북·러 당국자 간 합의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고용주가 장례비용 등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만 아르바이트 작업현장에서 사망한 경우는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어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2-11〉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일감은 구대가 찾아오거나 통역하는 사람이 소대장에게 파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통역은 원래 일감을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데도 찾아온 일감을 동료들에게 파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북한 노동자들은 전기, 수도, 벌목, 도로공사 등 비교적 숙련도가 필요한 일감보다는 미장, 타일, 아파트 수리, 식당 수리 등 큰 기술이 필요 없는 일감을 선호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노동자들에 비해 일을 빨리 끝낸다고 했

다. 러시아 노동자와 북한 노동자 사이에 일당 차이는 없지만 러시아 노동자가 한 달 걸릴 일을 북한 노동자들은 일주일 만에 끝내는 식이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 세금을 내지만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노동자나 다른 국가 노동자들에 비해 인기가 높았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정해진 시간(오전 9시~오후 5시) 외에는 일하는 법이 없으며 주말에도 일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인이나 베트남인들도 밤을 새워 일하는 경우가 없는데 북한 노동자들은 작업 현장에서 숙식하면서 밤늦도록 일을 해 계약 기간보다 빨리 작업을 끝낸다고 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일을 빨리 끝내고 새로운 일감을 찾아 나설 수 있어 좋고 일을 맡긴 쪽은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 이득인 셈이다.

〈사진 2-12〉 겨울에 발전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일산화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북한 노동자들



*출처: <<http://www.s125.ru>>.

한 예로 아르츨시의 한 교회에서 화장실 수리 당시에 러시아 업자는 8만 루블(3,000달러)에 한 달이 걸린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비해 북한 군인출신들을 고용한 북한의 남강회사는 같은 가격에 일주일만에 끝내기로 계약했다. 소대장이 첫날 4명의 기술자를 데려와 이틀 일하고 그 뒤에는 2명이 며칠 동안, 마지막 날에는 1명이 나와 일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교회는 한 달 동안 번거롭지 않아 좋았고 북한 노동자들은 일주일 만에 8만 루블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사진 2-13〉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한 교회 전경과 화장실 내부



아르츨시 국제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까지 입국한 북한 노동자 수는 1,006명이고 중국 노동자는 378명으로 북한 노동자가 훨씬 많았다.

아르츨시에 있는 한 레스토랑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는 북한 노동

자 2명이 일하고 있었다. 한 달 동안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근무로 계약했다고 한다. 그런데 두 사람은 현장에서 숙식하며 생활했다. 본인들은 점심은 숙소에서 배달해주고 저녁은 숙소에서 먹는다고 했지만 밤늦도록 현장에 불이 켜진 채 작업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었다. 둘 중 리더격 노동자인 ○모 씨는 전화기를 갖고 있었고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았다. 러시아의 인테리어 업자에게 일감을 소개받았다고 했다. 다른 노동자 □모 씨는 1965년생으로 앞니 대부분이 금니였다.

이들은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인터뷰를 완강히 거절했다. 아르츰시 공무원을 중간에 내세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가져간 인스턴트 된장국, 연어로 만든 후리가케(밥에 뿌려먹는 양념), 한국 김 등을 건네주자 맛있다는 고마워했다. 1960년대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들이나 1970년대 중동 근로자들처럼 몇 년씩 타국에서 생활해야했던 한국 근로자들을 떠올리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을 이해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한국인과 접촉이 엄격하게 금지됐다. 그 때문에 한국인들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중개업자를 거쳐야만 한다. 중개업자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고려인들이 대부분인데 중간에서 돈을 떼먹는 경우가 잦다고 했다. 전술한 경우와 같이 북한 노동자들은 받을 돈의 절반을 주고 러시아 마피아에게 부탁해 체불 임금을 받아내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한편 블라디보스토크 세관 책임자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일하러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입국 당시 계약한 회사의 초청장으로 받은 비자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불법 노동을 했기 때문에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러시아 정부 기관에 신

고하지 못하고 마피아를 통해 해결한다고 한다.

(3) 송금 및 귀국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 허용되는 외화는 최대 1만 달러다. 그 이상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신고과정에서 세관원들이 “어디서 벌었느냐, 세금을 냈느냐”며 따지고 들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거의 없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러시아 국경에서 북한 쪽으로 가방이나 물건을 던져두고 세관을 통과한 뒤 물건을 찾아갔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사람들이 던져둔 물건을 집어가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나중에는 비닐에 돈을 싸서 삼킨 뒤 세관을 통과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하산 세관원들이 알고 설사약을 강제로 먹여 감춘 돈을 몰수했다고 한다. 결국 북한 노동자들은 귀국하는 관리나 동료 노동자 편으로 수시로 돈을 가족들에게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극동역사연구소 라리사 자바로프스카야 박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연해주에서 일하는 동안 매달 월급이 북한 내 가족들에게 지급된다고는 했지만 노동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노동자들이 송금하지 않으면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 외화 상품점에서는 달러와 유로 외에 루블화도 통용되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반드시 달러로 바꾸거나 식료품, 옷, 전자제품 등을 사서 귀국한다. 이들 물품은 북한에서 팔거나 다시 출국하기 위한 뇌물용으로 쓰인다. 러시아 세관은 많은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뇌물을 주고 신고하지 않은 채 통관하는 것이 보통이다. 구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료들의 횡포에 고통당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련했다.

Ⅲ. 북한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인권

1. 북한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이 장에서는 연해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²⁶⁾들의 일상적 삶을 당사자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연구가 북한의 노동자 이주과정을 너무 정치적인 측면에서, 특히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만 이해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결국 통일에 대한 대안은 북한 체제의 붕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면 북한 노동자의 이주를 보다 폭넓은 ‘국제이주’라는 측면에서, 인권 역시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이 아니라 다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²⁷⁾ 좀 더 포괄적이고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1〉 이주의 유형

분류기준	이주의 유형
공간	국내이주(internal migration)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
시간	일시적 이주(temporary migration) 예: 단기계약근로자(temporary contract worker), 계절노동자(seasonal worker), 순환이주노동자(circular migrant worker)
	영구적 이주(permanent migration)

26) 북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호칭을 보통 ‘로동자’라고 하지만 러시아에 이주한 이후에는 ‘근로자’라고 많이 쓴다.

27) Terence Turner, “Human Rights, Human Difference: Anthropology’s Contribution to an Emancipatory Cultural Politics,”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Vol. 53, No. 3 (University of New Mexico, 1997) pp. 285~287.

분류기준	이주의 유형
이주형태	자발적 이주(voluntary migration) 예: 이주 노동자, 결혼이민자, 교육이민자, 은퇴이민자
	비자발적/강제이주(involuntary/forced migration) 예: 노예제(slavery), 계약노동(indentured laborer), 비호신청자/난민(asylum seeker/refugee), 국내유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이주규모	개인이주(individual migration)
	대량·집단이주(mass/collective migration)

*출처: 정재각, 『이주정책론』 (서울: 인간사랑, 2010), pp. 49~50; 엄한진, 『다문화사회론』 (서울: 소화, 2011), p. 42에서 재인용.

〈표 3-1〉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이주는 공간적으로는 국제이주에 속하며, 시간적으로는 일시적 이주에 속한다. 이주 형태는 오늘날 인권부분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으로 유엔 및 미국 국무부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비자발적/강제이주에 속하며 노예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인터뷰 등 현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자발적 이주에 속한다. 단, 이들의 자발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주 규모로는 개인이주라기보다는 집단이주에 속한다. 2014년 현재 북한 노동자의 수는 전 세계에 걸쳐 확인된 것만 약 52,300명~53,100명에 이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2억~23억 달러(약 1조 3000억~2조 6000억 원)²⁸⁾에 이른다²⁹⁾ 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 수가 이 수의 2~3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8) 송봉선은 이와 다르게 전세계의 북한 노동자의 규모를 6만~6만 5천명으로, 연간 송금액은 1.5~2.3억 달러로 집계하였다. 송봉선, “외화벌이로 연명하는 김정은,” 『월간 북한』, 8월호 (북한연구소, 2012), p. 75.

29) SHIN Chang-Hoon and GO Myong-Hyun,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4), pp. 21~30.

러시아 내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연구로는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 극동개발과의 관련성과 연계해서 연구한 이영형(2007, 2012)³⁰⁾이 있으며, 외국노동 경험이 있는 북한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2102)의 연구³¹⁾,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다루지 못한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³²⁾가 있다. 이 밖에도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인신매매감시대책국의 “2014년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가 있다.

SHIN Chang-Hoon & GO Myong-Hyun(2014)의 보고서에서는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해서 임금체불, 비인간적인 근로조건, 계약기간 동안 가족과의 격리를 대표적인 인권 침해로 보고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한의 해외 인력송출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
-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일일 12~16시간이다. 이러한 과중한 작업량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종종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
- 해외 작업현장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되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감시한다.
- 평균임금은 북한당국이 월 120~150달러 선으로 책정한다. 현지 사업자는 북한당국에 이보다 많은 액수를 지불하지만,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
- 개인별 노동계약의 기간은 보통 3년으로, 이 기간 동안 노동자는

30) 이영형,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참조.

31)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북한의 해외인력송출 실태』 (서울: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2012).

32) SHIN Chang-Hoon and GO Myong-Hyun,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

대부분 북한을 방문할 수 없다. 휴가는 주어지지 않으며, 다만 한 달에 1~2일 정도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되지 않고, 북한 당국이 현찰을 북한 내로 운반한다. 이는 UN 제재조치의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미국 국무부 보고서 역시 해외송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아래 내용과 같이 정리해 놓았다.

“...(상략) 이러한 계약에 따라 해외로 파견된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북한 정부 소속 ‘감시인(minder)’의 감시 하에 이동과 통신을 제한받는다.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정부가 배정하는 업무에 대해 선택권을 갖지 못하며 직업을 바꿀 자유가 없다. 이들은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인에게 불만을 털어놓을 경우 근로자 본인과 북한에 남아 있는 친인척들에 대한 정부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는다. 근로자의 임금은 북한 정부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며, 정부는 정부 사업에 대한 각종 ‘자발적’ 기여금 명목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갈취한다. ... 근로자들은 노동의 대가로 북한 정부에 지급된 금액 중 극히 일부분만을 수취한다. 수천 명의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벌목, 건설,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년 중 단 2일만 휴식을 취하고 생산 목표에 미달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일부는 귀국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인권과 인신매매에 관련된 보고서들은 인권에 대한 보편주의적인 법적 규정에 의거해 작성되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인식 및 경험과는 동떨어진 형식적이고 법적인 언

어로 표현된다. 따라서 해외송출 북한 노동자들의 실제 일상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러시아 근무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 전문가 워크숍,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아르츨름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해외송출 북한 노동자들의 일상생활과 노동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북한 노동자의 연해주 송출 과정 및 노동 체계

오늘날 북한은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 몽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앙골라, 폴란드, 오만, 리비아, 미얀마, 나이지리아, 알제리, 적도 기니, 에티오피아 등 북한과 외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세계 각 국에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중국 등 공장지대가 많은 곳은 파견될 경우 ‘월급’에만 의존해 생활해야 해서 ‘싼 곳’, ‘여자들이나 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중동 쪽은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 다녀온 사람들이 병을 앓고 죽는 경우가 많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는 것부터. 러시아 그 다음에 중동도 있고 그런데.

J씨: 러시아... 라는 게, 무슨 인기보다도 그냥 우리 로동하는 사람들. 막로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준에서는 좀 인기가 있었죠.

연구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

J씨: 네,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 뭐 나가서 뭐 외국에 가서 돈이라도 좀 벌어보고 하니까.

연구자: 월급 외에 또 벌 수가 있으니까.

J씨: 네, 로동하는 사람들 기준에서. 막로동하는 사람들 기준에서 좀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또 거기 가는 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지금은...

연구자: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카타르나 이런 데는 돈을 월급을 받죠?

J씨: 네...(중략).. 대체적으로 중동 쪽으로 가게 되면 많이 병을 앓고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긴 또 가기 싫어하고. (중략) 그쪽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기후조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후조건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 갔다 와서 뭐 한두 해 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뭐 돈이 (중요하다고)... 목숨까지 내놓을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를 많이 안 가죠.

연구자: 그럼 중국하고 러시아에 비교하면 어때요?

J씨: 중국은 건설로 나가는 일이 없을 걸요. 중국은 뭐... 중국은 어차피 그 뭐라 그럴까, 수입 대 지출이라고 할까. 그런 비율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다르지요. 중국은 아무래도 싸게 다 들어가는 데니까...(J씨, 러시아에서 건설공으로 근무, 탈북자).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것은 1967년부터다. 당시 러시아와 북한 간에 체결된 ‘임업협정’으로 별목공 3,500명이 파견되기 시작했다.³³⁾ 러시아로 파견되는 노동자의 종류로는 별목공 뿐 아니라 건설공, 광산일꾼, 농업일꾼, 수산일꾼 등으로 다양하다. 러시아에 제일 많이 파견되는 별목공들은 북한 각 지역의 임업부 산하 ‘재소관리부’가 담당하며 연해주 지역에 많이 파견되는 건설공들은 2009년 이전에는 각 성의 대외건설사업소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³⁴⁾

33) 이원웅, “북한 해외근로자, 어떻게 사나?,” 『통일한국』, 2013년 12호 (평화문제연구소, 2013).

34) 2009년 이후에는 각 사업소들이 조선대외건설지도국으로 통합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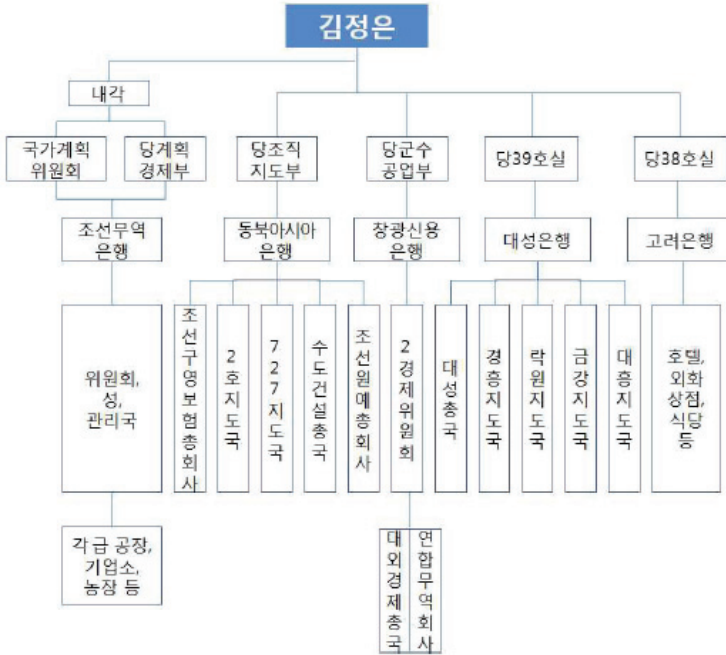
건설공 중에서 특수하게 조선인민경비대 7총국 소속으로 러시아에 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은 특각(별장) 등 특수한 건설에 투입된다.

러시아로 파견되는 건설공은 평양출신이 대다수로 전체 러시아 파견 건설노동자의 약 85~90%에 달한다. 2009년 이전에 대외건설사업소를 통해 연해주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경우 대개는 군 제대 후 일반 공장에 배치되어 기능공으로 일하다가 외국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많은 각 성의 대외건설사업소에 배치되기 위해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다고 한다. 도시경영성 대외건설사업부에 배치되어 있다가 연해주로 파견된 한 노동자에 따르면 도시경영성 산하 사업소 안에는 러시아와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진자야’라고 함)가 있으며 1998년 당시 2개 회사가 있었다고 한다.³⁵⁾ 러시아와 계약관계는 북한과 지방정부가 맺는 계약 방식과 북한과 러시아 개인회사와 맺는 계약방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 삼림이 많아 벌목공이 많이 파견된 아무르주나 하바로프스크주와 달리 연해주 지역에는 건설노동자가 대다수이며 이들은 콘크리트 작업자, 미장이, 석공, 목수, 배관공, 엔지니어 등으로 일하고 있다.

도시경영성 내 사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 러시아 내 사업소에 교대자가 있는 경우에 러시아로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순서에 맞춰 가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줄을 잡거나’(도움 받을 사람과 연결을 맺거나) 뇌물을 주어야 한다. 뇌물은 여러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모두 합할 경우 100달러 이상이 든다고 한다. 이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집을 팔거나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

35) 현재에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호트가 외에 모스크바 등 러시아의 많은 지역에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그림 3-1〉 북한 경제구조와 외화벌이 흐름



*출처: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북한의 해외인력송출 실태』, p. 16.

가. 체류기간

교대자로 확정되면 러시아로 떠나는 데 러시아로부터 받는 비자는 대개 5년 기한이다.³⁶⁾ 그러나 실제로는 근무를 시작한지 3년 만에 러시아에 계속 있을지, 북한으로 돌아갈지 여부를 심사받는다. 3년 만에 다시 심사를 하는 이유는 과거 김일성의 유훈 때문이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 “해외근로자는 3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교시했고 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3년을 해외체류 기간으로 둔다. 그러나 러

36) 일반 건설공과 달리 조선인민경비대 소속의 건설공의 경우에는 3년 만에 본국으로 되돌아가며 비자가 연장되지 않는다.

시아 내 사업소 관리자들은 뇌물을 받고 2년 더 체류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표 3-2〉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현황

구분	노동자 현황(명)		최초 입국 허가권자 및 입국시기	활동지역	
	①외무성 이민국T/O 통계 (최근허가년도)	②연방보안군(FSR) 추정치			
1	별목공	13,700명 (2010년)	약15,790명	브레즈네프 (1972년) ³⁷⁾	하바로브스크지역의 틴따와 체크도민 등 5개 지역
2	건설공	1,500명 (2011.3)	약1,880명	안드로포프 (1983년)	러시아지역(특히 APEC공사장에 최근 많이 왔음)
3	광산 일꾼	1,100명 (2001년)	약970명	후루시초프 (1954년)	츄코트카 마가단 캄차카와 사하자치공화국 등
4	농업 일꾼	550명 (2009년)	약540명	후루시초프 (1963년)	연해주와 흑해연안 크라스노달과 로스토브 지역
5	수산 일꾼	150명 (2010년)	150명	브레즈네프 (1979년)	베링해와 오호츠크해 등 북극권 해역
6	떠돌이 일꾼	0 (통계없음)	약1,090명	한·소수교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음	산삼, 사향, 웅담 등 약재와 수퍼노트 유통
합계		17,000명(T/O)	20,420명		

*출처: 본 프로젝트 비공개 워크숍 자료집(2014.10.31).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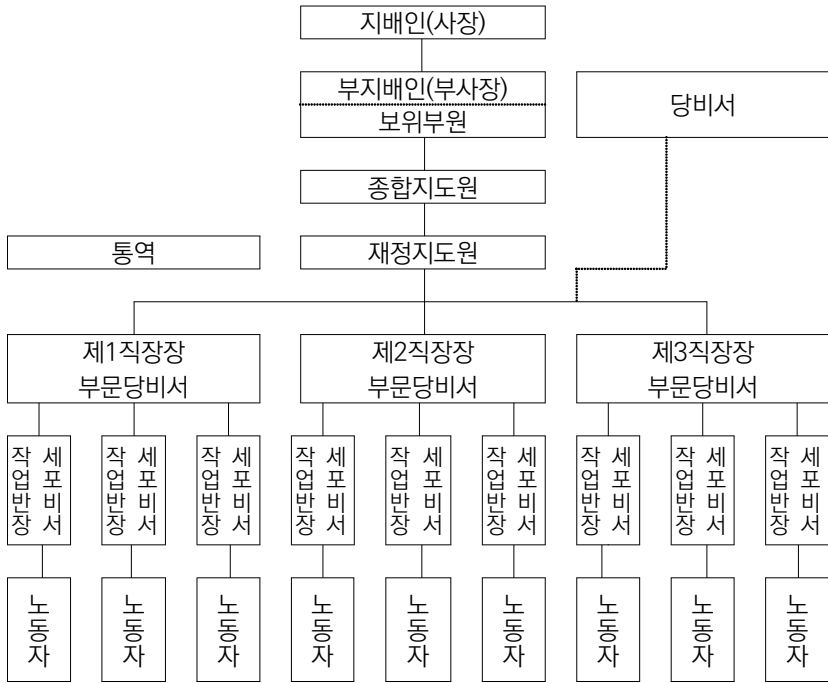
37) 일반적으로 1967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으나 본 표에서는 1972년을 최초 입국시기로 보았다.

38) 자료의 출처는 ① 극동러시아 총독실 이민국 파견실, ② 극동러시아군관구 前KGB대좌 孫알렉산드미카일로비취의 아들인 “샤샤”이다.

나. 러시아 내 근무지의 구조와 생활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로 가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러시아 지방정부나 러시아 회사의 관리 하에 일거리를 배당받고 노동을 하게 된다. 즉, 북한당국 관계자들이 러시아에 만든 회사와 러시아 측의 특정 건설회사가 계약을 하면 모든 노동에 대한 분배와 수익을 러시아측 건설회사가 담당한다. 북한측 회사는 러시아측과 통역, 노동자들의 주거 확보 및 감시하는 것이 주업무다. 그 회사들은 외국인투자회사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주로 교외지역의 아파트나 공장을 임대해 사용한다. 북한 노동자들이 '숙소'라고 부르는 이곳에는 노동자 이외에도 지배인, 부지배인, 당비서 등 다양한 직급의 북한파견 관리자들도 있다. 이들 회사는 연해주 내 각 지역(나호트카시, 블라디보스토크시, 아르츨시, 우스리스크시 등)별로 1~4개 가량이 있으며 각 사업소(회사)별로 대략 200~400여 명 정도가 함께 기거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매일 모두 숙소에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작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각 사업소(회사)의 내부는 지배인(사장)에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조직화되어 있다.

〈그림 3-2〉 러시아 파견 북한 사업소(회사) 내 조직도



*출처: 러시아 현지조사 인터뷰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뷰를 종합하여 작성함.

〈그림 3-2〉의 조직도를 보면 이 사업소의 제일 총괄을 담당하는 역할은 ‘지배인’(혹은 사장)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지배인(부사장)인데 이들은 보위부에서 파견한 보위부원이 대부분이다. 보위부원이라는 직책으로는 해외에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지배인의 형식으로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소가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부사장(부지배인)과 보위부원이 독립되어 있다. 이 보위부원은 북한 노동자들이 외부 자본주의 세계에 물들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당비서는 조선로동당에서 파견한 관리로 주로 사상총화를 담당한

다. 노동자 중 당비서의 지시에 따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문당 비서와 세포비서인데 당비서가 이들의 당생활총화를 감독한다.

통역은 3~4명 정도가 있는데 큰 회사는 보통 4명을 둔다. 통역은 주통역과 지배인 통역으로 다시 나뉜다. 주통역은 주로 계약을 담당하고 나머지 통역은 일감을 ‘물어오는’ 역할을 한다.

사업소 내의 전체 노동자는 각 직장장이 약 40명 정도씩 담당한다. 그 밑에는 다시 3개의 작업반으로 나누어져 한 작업반에 13명 정도씩 배치된다. 각 작업반의 책임자인 작업반장은 회사의 경우 ‘소대장’으로도 불리는데 이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매주 작업총화 즉 계획분 총화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세포반장은 ‘당생활 총화’ 즉 사상총화를 담당한다. 총화는 일주일에 한번으로 주로 토요일 저녁 7시경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1시간 정도 이루어진다. 작업총화에서는 주로 국가에 납부할 계획분에 대해 강조하고 사상총화는 한국드라마나 인터넷 등에 접촉하는 것을 감시한다. ‘동지 호상간 비판’도 존재하여 동료끼리 서로 맞대고 비판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는다. 그러나 모두 해외에 나와 고생하는 처지임을 알기에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그 강도가 덜하다고 한다. 대개 그냥 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북한 노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작업총화, 즉 계획분 총화이다.

3. 계획분과 노동자의 급여

북한 노동자들의 일감은 계약 여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회사와 북한측 회사 노동자 500명이 일할 작업에 대한 계약을 맺으면

노동자들이 작업현장에 가서 일하고 사업소가 직접 급료를 지급받으며 이를 연결한 러시아측 사장에게는 매달 일정액을 지불한다. 이러한 계약 외에 통역들이 러시아 업자들과 소규모로 맺은 계약이 있는데, 통역들은 이 ‘일감 물어오는’ 것을 노동자들과의 개인적 거래를 통해 따로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처음 사업소에 들어오면서 러시아어를 몰랐을 때는 통역이 알려준 작업소로 가서 노동을 하고 통역에게 알선해준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반 년 정도 지나면 직접 일을 구하기도 한다.

C씨: 이 4명 통역은 기본 월급 타려면 일감을 물어서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해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구자: 통역이?

C씨: 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개인들이 다... 통역들이 물어가지고는 팔아먹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이해됩니까. 내가 이제 내 통역인데 내가 일감을 하나 물었습니다. 그렇카면(그렇게 하면) 너 오라. 너 한 인원 5명 데리고 이거 하나 몰라. 이거 일하라. 이거 얼마짜린데 여기서 얼마는 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돈 벌죠. 통역도 또... (C씨, 러시아에서 건설공으로 근무, 탈북자).

북한 노동자들은 주어진 일감에 따라 노동을 하고 계획분 총화를 통해 매달 25일에 주어진 계획분을 국가에 납부한다. 계획분은 <표 3-3>과 같이 북한 노동자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상납금액’으로 알려져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기술해왔다. 또한 파견된 사업소 혹은 회사의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에게 계획분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북한 노동자들에게 계획분은 매달 정해져 있는 관리비 일체까지를 의미했다.

〈표 3-3〉 블라디보스토크시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상납 금액

시 기	상 납 금 액
2000년 전후	200 \$
2003년 전후	300 \$
2006년	500 \$

*출처: 이영형,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p. 70.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러시아에서 준관리자급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인터뷰를 한 결과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계획분 자체 금액은 2013년 당시까지 월 240달러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소나 회사에 따라서 계획분 외에 기숙사 임대료, 식비와 관리비, 러시아에 내는 세금을 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분까지 합해 북한 노동자가 매월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며 이 경우 달러로 환산시 550~1,000달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연구자1: 500불 정도가 국가계획분이고 나머지 관리들하고 식사비나 이렇게...

J씨: 아니 몰라서 그래요. 실지 국가에다 반납하는 돈은 그렇게 안돼요. 얼마 안돼요.

연구자2: 맞아. 그래서 그게 세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 저기가. 그러니까 카타르에 나가도 120불이...

J씨: 120불이 아니고 진짜... 240불. 240불이에요. 옛날에 120불 했어요. 240불로 올랐거든요.

연구자1: 아니 240불이었다가 550불로.

J씨: 아냐, 550불도 아니에요. 550... 그렇게나 국가에다 반납은 안해요. (중략) 그게 그 잘못된 겁니다. 550불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회사에다 바치는 계획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 1,500달러는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게...

연구자2: 그렇죠. 맞아요.

J씨: 네, 이제 말마따나 45,000루블이면 한 60,000루블이 돼야 되거든요.

연구자1: 그럼 240불이에요? 240불?

J씨: 네, 240불이에요. (중략) 옛날에 120불 했었어요.

(중략)

따라서 노동자들은 계획분, 회사운영비, 세금 등 구체적인 금액을 모른 채 무조건 합해진 금액을 ‘계획분’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제하게 된다. 때로는 여기에다 ‘충성의 자금’이라는 명목이 합해질 경우도 있다. 이 금액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북한측 사업소 혹은 회사 관리자들은 “러시아 측이 공사단가 등을 낮춰 잡는 바람에 이번에 계획분이 올랐다”는 식으로 구실을 붙인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러시아측에서 통상 북한 노동자 1인에게 정한 급여인 800달러(미화 기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J씨: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왜 사람이예요. 사람이라는 게 서로 이제 머리를 굴리려고... 애네들(관리자들)도 지네들이 살아가려면 구실을 붙이게끔 돼 있어요. 러시아 측하고 이제 말마따나 러시아 측하고 뭐 돈이 작아 안 된다든지 이게 단가가 낮다든지 아니면 그 외의... 내가 사장이라고 해도 솔직히, 내가 사장이라고 해도 내가 부리고 있는 사람이 내가 돈을 벌려면 이 사람을 어떻게든 속여 넘겨야지 돈을 벌거든요. 솔직히. 이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야지...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거짓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하려면 뭐 하겠어요. 러시아 측하고 무슨 뭐 단가가 낮다든지 이게 니들이 안 맞게 일을 해

도 단가가 낮아서 국가에다 바치는 량, 뭐 회사운영비 뭐 해서 나머지가 없어. 그런 식으로 애길 하거든요.

연구자: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나요? 하란 대로 했는데 그냥.

J씨: 뭐 기분 나빠... 뭐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안 하겠으면 가라.” 그래요. 개네들은. “너 이제라도 가라. 보내 줄게. (집에) 보내 줄게”(J씨, 러시아에서 건설공으로 근무, 탈북자).

매주 총화 중 작업총화는 국가에서 할당한 계획분³⁹⁾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노동자뿐 아니라 각 사업소에서는 오로지 계획분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며, 매달 25일~31일까지는 계획분을 분납으로라도 해서 채워야 한다. 노동자들이 계획분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미수차고 나간다’고 하며 미수금은 그 다음 달까지 꼭 채워 넣어야 한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은 문서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실제로 회사 지배인과 통역은 이 사업이 얼마인지 공개를 하지 않고 총화 때마다 계획분을 ‘(달성)했다’, ‘안했다’ 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⁴⁰⁾ 만약 몇 개월간 계획분에 대해 계속 미수를 차게 되면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송환된다.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것은 그동안 러시아에 오기 위해 빚을 진 경우들이 많아 거의 죽음과도 같다고 노동자들은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여기 회사하고 일 할 때는 한 푼도 못 받아 봤습니다.

39) ‘국가계획분’이라고도 한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계획화(planning)란 국민경제 내의 제반 계획의 작성과 실행, 계획수행 감독과 평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196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 골격은 유지하고 있다.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pp. 7~11.

40) 사업소에 따라서 계획분 외에 기숙사 임대료, 식비와 관리비, 러시아에 내는 세금을 더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계획분까지 합해 북한 노동자가 매월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700~1,000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총화 때마다는 주마다 총화 때마다, 토요일마다 총화 때마다 흥길동하면 흥길동, 갑돌이면 갑돌이가 계획분 다 했다. 수행했다 얘기합니다. 계획분만 다 했다고 얘기 합니다. 그 편안하죠. 밥 먹는 건 거기서 먹여주니까. 잠자는 건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바라고... 돈은 쥐어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야간에 나간 단 말이야 일하러. 야간에 일 물어가지고, 자체로 물어가지고 야간에 가서 일 한단 말이에요(C씨, 러시아에서 건설공으로 근무, 탈북자).

러시아 내 모든 노동의 핵심은 국가에 상납하는 계획분의 납부 여하에 달려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상 ‘개인’이 일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이주 초반에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들은 계획분이 ‘몸에 붙어있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북한에서 러시아로 떠나는 순간부터 3~4개월간은 갚아야 할 계획분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연구자: 처음부터 이미 1,000달러를 지금 떼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들어왔을 때.

J씨: 그렇게 하고도 가죠.

연구자: 이 1,000불은 도착하고 들었어요? 갈 때 들었어요? 평양에서 들었어요?

J씨: 우리 들어갈 적에는 러시아로 나갈 적에는 그게 다 붙어... 매 사람한테 다 붙어 있거든요.

연구자: 알고 갔어요? 1,000달러 있다는 걸.

J씨: 네, 그거 뭐... 상대방도 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런 정보도 다 있고. 또 이미 전에 갔다 왔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내 몸에 그 돈이 붙어 있다고. 네.

연구자: 이미 붙어 있다고 느끼는...

J씨: 감지하고 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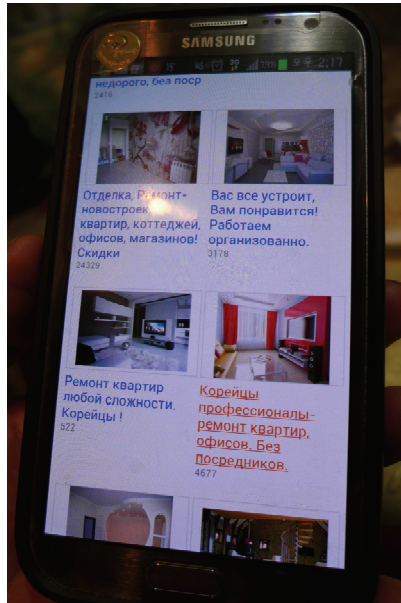
연구자: 이게 3년에 1,000불이에요? 아니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1,000불.

J씨: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내 몸에 그제 1,000불이 붙어 있다. 내 1,000불을 그제 가자마자 그거를 물어줘야 된다(J씨, 러시아에서 건설공으로 근무, 탈북자).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계획분을 모두 채우게 될 경우 나머지 노동에 따른 수입은 자기 개인의 것이 된다. 즉 북한 노동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계획분 외에 개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정된 일 외에 일을 더하거나, 아예 지배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따로 나가 노동할 경우 그 수입은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된다. 지배인 혹은 사장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일거리를 스스로 찾는 경우를 ‘청부’ 나간다고 한다. 청부는 계획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 관리자에게 얘기하고 나가는 경우와 귀국을 1년 정도 앞두었는데 고향에 가지고 갈 수입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락된다. 노동자들은 초반에는 통역을 통하여 일감을 받아 지정된 일 외의 일을 하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동안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의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러시아 내에서 이런 일을 중개해주는 고려인⁴¹⁾을 통해 일감을 얻기도 한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인터넷으로 구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고려인들이 인터넷 베희시장에 북한 노동자들의 구직을 신청하는 광고를 올려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사진 3-1〉).

41) 현지 고려인들의 경우에는 임금의 10% 정도를 중개 수수료로 받고 일감을 중개해준다. 고려인들 중에는 진심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위해 중개를 하고 있으나, 일부는 북한 노동자들의 보수를 떼어먹기도 하여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개상주’, ‘사바타 상주’ 등의 심한 욕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러시아어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 할 수 없이 고려인에게 일감을 구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사진 3-1〉 인터넷 벼룩시장에 실린 북한 노동자의 구직 광고
(핸드폰 화면의 오른쪽 아래)



계획분 외의 급여는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동자들은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해서라도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며, 공사시간을 단축하여 다른 일을 빨리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퇴근하기보다는 공사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려 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을 따로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몸에 지니거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곳에 묻어두기도 한다. 노동자의 기술과 고용 여하에 따라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은 각각 다른데, 개인 수입이 1년에 500달러 정도인 노동자가 있는 반면 3,000달러 정도인 노동자도 있으며, 작업 반장 혹은 소대장의 경우 1개월에 3,000달러 이상을 벌기도 한다. 이렇게 번 돈은 고국에 돌아가는 동료를 통해 가족에게 전달을 부탁하기도 하고⁴²⁾ 휴가 때 직접 자신이 가지고 가기도 한다.

계획분을 내고 못 내고의 차이, 계획분 외에 얼마를 벌었는지의 차이가 때문에 숙소에서는 동료 간에 불신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져 간혹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동료 노동자를 ‘승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같은 지역이라 일감이 제한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일을 빼앗아 와야 자신의 수입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지역에 근무를 갔을 경우 누가 더 일을 했고, 누구는 일을 하지 않고 놀았는지에 대해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있다고 한다. 당연히 서로 얼마를 벌었는지 얘기하지 않으며 어느 공사장을 다녀왔는지도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

4. ‘청부’ 형태의 노동 과정

북한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소와 맺은 계약에 의한 노동 외에 개인적으로 러시아인의 집수리 등을 수주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는 지은 지 20~50년 이상 된 오래된 집들이 많으며 창문틀 등이 대부분 목조로 되어 있어 겨울이 되면 외풍이 아주 심하다. 이런 집들을 수리하는 과정은 보통 창문틀을 목조대신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쌍크대 등도 교체하는 정도다. 이런 집수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러시아 노동자, 북한 노동자, 우즈벡 노동자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베트남 노동자들도 새롭게 등장했다. 이들 중 우즈벡 노동자와 베트남 노동자는 일이 너무 느리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인 노동자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 접경 지

42) 동료에게 보내는 경우 보내는 금액의 10%정도는 주어야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나, 절친한 경우 그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족들에게 전달해주시기도 한다.

역인 이 지역에서 중국 노동자들은 환영받지 못한다. 우즈베크 노동자 역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통제가 힘들고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결국 집수리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인기가 있다.

비자 발급에 있어서도 북한 노동자들은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통상 5년을 받고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심지어 10년, 15년 비자도 가능하지만,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온 노동자는 통상 1년이며 1년에 해당하는 쿼터를 할당받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뒤 연장도 힘들다. 체류기간이 길어질 수록 북한 노동자들은 다른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에 비해 숙련도가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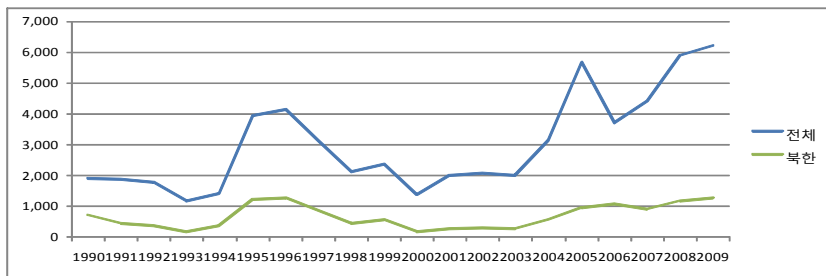
북한 노동자가 선호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다른 국가출신 노동자들보다 근면하다는 점도 있지만 집수리 등과 관련된 계약이 일당제가 아니라 도급제로 계산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북한 노동자가 여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예를 들어, 집수리 공사 최소 비용이 10만 루블(약 1,870달러, 2014년10월 기준)일 경우 러시아 노동자들은 공사기간 한 달에 20만 루블을 청구하는 반면 북한 노동자들은 보름 동안 10만 루블에 일을 끝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정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며, 중간에 휴식시간도 갖지만 북한 노동자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심지어 작업장에서 숙식까지 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한다. 이렇게 해서 남은 15일 동안 새로운 일거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도급제가 아닌 일당제로 하더라도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이 러시아 노동자의 3배에 달하기 때문에 크게 유리하다. 러시아 노동자가 1만 4천 루블 정도 받는 보수의 일을 3일에 걸쳐서 한다면 북한 노동자는 같은 보수를 받고 단 하루에 끝내버리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휴식 없이 일하고 출퇴근 시간까지 절약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또 우즈베크 노동자와 베트남 노동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숙련도가 높아지고 있어 미래 노동조건이 밝지만은 않다.

〈표 3-4〉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 현황(1990~2009년)

(단위: 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전체 노동자	1,902	1,888	1,779	1,181	1,421	3,956	4,144	3,119	2,134	2,373
북한 노동자	706	429	358	180	362	1,218	1,268	861	440	558
점유%	37.1	22.7	20.1	15.2	25.5	30.8	30.6	27.6	20.6	23.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노동자	1,369	2,013	2,089	2,020	3,126	5,693	3,717	4,419	5,906	6,225
북한 노동자	171	274	292	263	555	951	1,082	897	1,169	1,270
점유%	12.5	13.6	14.0	13.0	17.6	16.7	29.1	20.3	19.8	20.4



*출처: 본 프로젝트 비공개 워크숍 자료집(2014.10.31)⁴³⁾

43) 자료의 출처는 ① 1990~1991년 통계: 극동농공위원회, “프리모리예 지역 외국인 인력 분포” 1993년판 의류(봉제)관련 편 내용 중에서, ② 1992~2005년 통계: Larisa V. Zabrovskaya, “Economic Contacts between the DPRK and the Russian Far East: 1992~2005”, ③ 2006~2009년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북한 노동자들의 편법적인 노동은 자국노동자 보호와 세금징수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이 계획분 뿐만 아니라 숙소 임대료, 지배인과 통역들에 바쳐야 하는 상납금의 압박, 이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위생문제와 소방문제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이 극도로 열악하다는 것을 러시아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노동자의 ‘인권’이라고 말한다. 시 정부 역시 북한 사업소가 정식 계약에 따른 사업소득 이외에도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소득을 축소해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북한사람들이 ‘심각한 고난 속에 살고 있다’고 인식해 되도록이면 눈감아준다고 한다.⁴⁴⁾ 그러나 문제가 더 커질 경우 이민국, 위생국, 소방국 등을 통해 북한 사업소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감시체제와 위험

러시아 내 북한사업소가 북한 노동자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노동자들이 외부 자본주의에 물드는 일이다. 따라서 사업소는 겉보기에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대식 위계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자들이 작업을 나갈 경우에 반드시 2~5명씩 조를 짜서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조원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만일 한 명이 잘못

통계: 연해주 FSB(연방보안군) 지부 자료 중 외국인들의 활동에 관한 내용(APEC 개최를 위한 자료문에서 발췌)이다. ※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은 중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의 비자발급 완화 조치의 효과로 판단되는데 특히 건설노동자는 APEC 건설일꾼들임.

44) 연해주 △△시 정부 고위급 직원으로 근무하는 A씨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다.

했을 경우 조원 모두가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한편 조를 이뤄 단체로 활동하는 방식은 북한 노동자들이 현금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는 범죄자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수단도 되고 있다. 실제로 강도들이 북한 노동자들의 출퇴근길에 매복해 있다가 돈을 강탈하거나 심지어 자동차로 깔아 죽이는 일이 잦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 노동자들은 작업장의 성격에 따라 매일 숙소에 돌아오지 않고 아예 작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업소에서 ‘검열’이 나온다. 검열은 보위부에서 파견된 부지배인과 직장장이 불시에 찾아오며,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상태를 감독한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허용된 전화는 오로지 중국산 구식 핸드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제품이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따로 일감을 얻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마트폰을 쓰다보면 일감에 관련된 것 외에 인터넷을 검색할 기회가 생긴다. 부지배인과 직장장이 불시에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 검열을 나오게 되면 스마트폰은 바로 압수당하며, 부지배인은 단순히 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컴퓨터와 연결해 노동자들이 어떤 것을 검색했는지 세밀하게 체크한다. 만일 스마트폰 내용에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 관련 정보, 섹스 관련 내용 등 자본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이를 소지한 노동자는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징계를 받을 경우 북한에 다시 돌아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검열에 걸렸을 경우에 노동자들은 “얼떨결에 눌렀는데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변명하지만 관리자들은 대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을 봐주는 대신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맡은 일감에 높은 수수료를 내고 일하게 만들기도 한다.

스마트폰 외에도 건축 일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러시아 가정 내에 있는 TV를 접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다른 내용들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을 북한이 일으켰다는 사실이나 한국의 발전상 등을 접한다. 북한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이 남조선(한국) 소식을 상당한 정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내자: 이분은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A씨: 출장 오셨습니까?

안내자: 한국 대학교에서 교수님

A씨: 어느 대학교입니까?

연구자: ○○대학교라고...

A씨: 그건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네 경기도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아는데 있으세요?

A씨: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안내자: 조선시대에 쓰는 대학이름...

A씨: 한국에서 대학교수면 대단하시겠네요?

연구자: 한국에서 대학교수 대단한 거 어떻게 알아요?

A씨: 아니 그 세상 일 감추질 못하니까... 남조선에 대한 정세. 대학 교수쯤 되면 대단하겠다...

이: 북한도 대학교수면 대단하잖아요.

A씨: 에이...

연구자: 존경받잖아요.

A씨: 그럼 학생들이 존경하고. (그러나) 보수는 특별한 거 없고...

(안내자: 러시아 내에서 연구자를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으로 안내해준 한국인 러시아 체류자 / A: '청부'를 하는 북한 노동자).

북한 노동자들은 보위부 검열에 걸리거나 계획분 미납액이 너무 많

아진 경우, 또는 사업소가 부실해져 해산되는 경우 등 북한에 송환될 위험이 커지면 사업소를 이탈해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 ‘토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간혹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북한의 이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노동자들이 ‘토끼’가 되기도 한다. ‘토끼’는 일종의 ‘행방불명자’로, 탈북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토끼’가 된 사람들은 보위부와 당기관에서 파견한 인력들에게 쫓겨 다닌다. 이들을 피하기 위해 ‘토끼’들은 시골로 숨어들거나 러시아 여자나 고려인 여자와 같이 살기도 한다. ‘토끼’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일설에 따르면 연해주 내 우스리스크시의 경우 약 5,000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

‘토끼’가 이렇게 대규모로 늘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몇 년 전 북한 노동자들이 술과 도박에 깊이 빠져든 일을 꼽을 수 있다. 사업소 간부들이 도박장 입구 곳곳에 지켜 서서 북한 노동자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을 정도로 술과 도박이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한동안 유행이었으며,⁴⁵⁾ 여기에서 탕진한 노동자들이 계획분을 제때 내지 못해 사업소를 대량 탈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토끼’라 불리는 사업소 이탈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에 체류한지 3~6개월만 되면 일감을 찾는 요령뿐 아니라 인터넷과 TV 등 미디어 등을 통해 외부세계 혹은 자본주의 세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이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한다. 건설노동자들은 근력뿐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벌목공 등 여타의 직업에 비해 수입이 높으며, 가족이 모두 북한에 있기 때문에 무작정 탈북을

45) 북한 노동자들이 찾는 대표적인 유희업소 지역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치카이며, 도박장은 루고바이아, 발리아에바, 페르브이루치카 등이 있다. 노동자들끼리 숙소에서 주패 등 도박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결심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탈북을 결심하는 경우는 북한에 다시 송환될 위험이 있을 때가 대부분이다. 러시아에 파견되기 위해 관련된 부처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고 심지어 집까지 팔았던 북한 노동자들에게 북한으로의 송환은 거의 죽음과도 같은 ‘사회적 매장’이기 때문이다.

6. 귀국 후의 북한 노동자

러시아에 노동을 다녀온 사람들을 북한에서는 러시아 옛 명칭인 소련을 따서 ‘재쏘생’이라고 한다. 이들은 돈이 많은 축은 못되고 중간정도 생활을 영위하는데, 직장에서는 이들 재쏘생들이 돈이 많다고 알려져서 “좀 쉬라”, “좀 비키라”는 말을 듣는 등 주변의 시선이 곱지는 않다고 한다. 재쏘생들은 직장에 다니기보다 주로 장사를 하는데, 돈을 버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오히려 종종 사기를 당한다고 한다.

그래서 재쏘생들은 가진 돈으로 간부가 된 뒤 다시 러시아에 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뇌물을 통해 직장장이 되거나 암시장에서 대학졸업증을 위조한 ‘명판’을 구입해 소장으로 진급한 뒤 다시 러시아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러시아에 나가는 것을 ‘재탕’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재탕이 되어 나가도 가족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이혼 등 가족 해체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북한은 2007~2008년경부터 가족동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J씨: 재쏘생들은 대체적으로 장사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무슨 저기... 장사해서 살아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구 그 돈으로 가져가서 자기 앞, 자기 앞일을 개척

하죠. 그러니까 무슨 우에(위에) 놈들한테 돈을 찢러 주고...

연구자: 좋은 데 들어가는 거죠.

J씨: 그렇죠. (중략) 돈 벌어 가지고 돈 찢러주고... 그거 내가 다음
 번에 뭐 직장장. 그리고 또 뭐 대학 명판 같은 거 하나 사겠죠.
 네, 직장장에서 또 뭐 한 3년, 한 5년 나가서 러시아 나가서 또
 좀 돈 좀 벌다가 돈을 또 벌어 와가지고 또 쓰겠죠. 그 다음엔
 또 좀 더 높은 간부들 대상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계
 통이죠. 계단계단 올라가는 계. 그런 거죠.

연구자: 그 직급을 높여서. 이제는 부지배인이나 이렇게 가는 거지요.

J씨: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능력이 안 되면 그저... 능력이 안
 되면 그저 계속 또 다시 들어왔다가는 또 한 1년 있다가 다시
 나와서 또 로동하고. 또 한 3년 있다가 계속 로동하는 사람들.
 평균 다 그래요. 평균. 평균 다 그래요(J씨, 러시아에서 건설공
 으로 근무, 탈북자).

이상과 같이 러시아에 파견되어 이주노동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귀
 국 후 신분 상승을 통해 다시 러시아에 나가는 일종의 이주 회로 속에
 편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상납과 노동자 착취의 연결고리가 자연
 스럽게 생성되어 이주의 순환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7. 북한 노동자의 인권과 향후 전망

이상과 같이 북한 노동자들의 초기 송출과정은 ‘자발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사회적 환경과 출신배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송출
 과정 및 이후의 배치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감시체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현재까지는 러시아 사회에서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한 노동자의 여러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눈감아주고 있지만 앞으로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루어야 하는 사업이 점차 증가하면서 결국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커다란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또 우즈베크 노동자, 베트남 노동자, 중국 노동자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작업장에서 숙식하는 등 장시간의 무리한 노동 방식만 가지고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지켜나가기 어렵다.

국제 이주 노동은 자국 내 노동과 달라서 모국과 거주국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사회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파견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기본 인권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IV. 결론

연해주 지역은 1860년 베이징조약에 의해 청(淸)에서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이후 개발정책의 추진과 함께 수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동북아시아 특히 한·중·러의 경제 협력과 개발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국제노동 이주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해외파견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러시아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동시에 북한 내 외교정책과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구조적 경제난을 겪으면서 경제적 기반이 사실상 붕괴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인력 송출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들에 대해 극도로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서는 노동자의 해외파견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며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 정부가 취하고 있는 해외 노동자 파견 정책은 개별 노동자의 선택보다는 국가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족과의 격리, 계획분 상납 의무, 북한 정부소속 관리자들에 의한 노동자 감시체계가 작동된다. 이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온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볼 때 또 하나의 인권 침해 사례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제출된 북한의 인권 및 인신매매에 관련된 보고서들은 주로 보편주의적인 법적 규정에 의거해 작성되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인식 및 경험과는 동떨어진 형식적이고 법적인 언어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북한 노동자들 대다수가 비교적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는 점을

북한 사회의 시각과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송출 및 유지 구조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은 전적인 강제적 이주라기보다는 표면상으로는 자발적 노동이주로, 심층적으로는 강제와 자발적 선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해외로 파견되기 위해 북한주민들은 관련된 부처의 관리들에게 큰 규모의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데 이것은 초기 송출과정이 자발적 형태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이 일단 러시아로 이주를 하게 되면 러시아 내에 소재하는 북한의 사업소 체제에 편입되는데, 이때부터 총화와 감시 속에 노동을 하면서 매달 계획분을 채워야 한다. 이것은 북한 노동자의 선택이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보다 복잡한 구조적 선택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주체적 선택의 여지는 남아있다. 즉 북한 노동자들은 계획분을 일정 정도 채우고 나면 개별적으로 따로 일감을 찾아서 더 노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자발적 가외 노동이 노동자들 수입의 큰 원천이 된다.

둘째,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계획분 혹은 국가 계획분은 착취라기보다는 의무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북한인권의 핵심적 문제로 자주 지목되는 계획분 혹은 국가계획분은 자본주의 체제의 시각에서 보면 일종의 불온한 '상납금'에 해당하지만, 계획경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북한사회에서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체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지에서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한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계획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파견한 정부관리들에 의한 철저한 감시다. 부지배인, 당

비서, 종합지도원 등은 오로지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체제 유지를 위해 파견되었기 때문에 사업소 유지를 위한 필요인력으로는 부적합하며 오히려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의 감시체제와 규율망 속에서도 내부인 뿐만 아니라 현지인 및 고려인, 조선족 등의 한인들과도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의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와 비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보기도 한다.

넷째, 러시아에 파견되어 이주노동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귀국 후 신분 상승 혹은 세탁을 통해 다시 러시아에 송출되는 일종의 이주 회로 속에 편입된다. 이 과정에서 뇌물상납과 노동자 착취의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이주의 순환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현재까지는 러시아 사회에서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한 노동자의 여러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눈감아주고 있지만 앞으로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루어야 하는 사업이 점차 증가하면서 결국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커다란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며 북한 노동자 역시 장시간의 무리한 노동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국제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켜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사회는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파견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점차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이주는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의 모든 부분에 작동하며,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도 이제는 해외에서 더 이상 북한 노동자들이 개방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을 막기가 힘들어진다. 북한 노동자

들은 가외 노동을 통해 더욱 자본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해지는데, 자본주의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이들 내에 동료 간 살인 등 일탈 행위도 증가한다. 따라서 북한이 이에 대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사회 역시 북한의 노동자 해외송출 과정을 ‘다른’ 문화체계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북한이 한국의 러시아 내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고려 역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변하지 않는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인권 침해와 차별,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게 인권이 무엇인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이 러시아 등 제3국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간 협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3국과 남북한 간의 협력을 통해서도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렴한 노동력이 장점인 북한과 자본력 및 기술력이 장점인 한국, 토지 및 자재 등을 제공하는 제3국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러 및 남·북·중 등 다자간 협력 사업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전략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북한의 노동자 해외파견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해주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 파견돼 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의 첫 번째 경우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실태의 일부 사례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북한이 연해주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많은 수의 노동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중국 연변지역을 포함한 동북 3성 지역, 러시아 사할린 지역, 몽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현장연구는 북한의 노동자 해외파견 정책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해외에 파견돼 갖은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노동자들은 (국가)계획분을 의무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보다는 북한 당국의 감시체계에 의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북한 당국의 감시체계가 해당국의 노동 관련 법·제도에서 규정하는 것에 비해 과도할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과도한 감시체계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 당국자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보건·안전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카타르 당국이 일부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같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해주를 비롯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추가 연구를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는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영수 외. 『김정일 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북한의 해외인력송출 실태』. 서울: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2012.
- 아사쿠라 도시오·오타 심페이 엮음. 『한민족 해외동포의 현주소: 당사자와 일본 연구자의 목소리』. 서울: 학연문화사, 2012.
-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 엄한진. 『다문화사회론』. 서울: 소화, 2011.
- 이영형.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장달중 편. 『현대북한학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3.
- 정재각. 『이주정책론』. 서울: 인간사랑, 2010.
- 정한구·문수언 공편. 『러시아 정치의 이해』. 서울: 나남, 1995.
- 허문영.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赤羽恒雄, アンナ・ワシリエ바 編. 『国境を越える人々』. 国際書院, 2006.
- 中国朝鮮族研究会 編. 『朝鮮族のグローバルな移動と国際ネットワーク』. アジア経済文化研究所, 2006.
- SHIN Chang-Hoon and GO Myong-Hyun.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4.

2. 논문

- 송봉선. “외화벌이로 연명하는 김정은.” 『월간 북한』. 8월호 (북한연구소), 2012.
- 심현용. “동북아 접경지대 극동 연해주와 한민족 디아스포라.”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4집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0.
- 이애리아. “연해주 지역에서 고투하는 다국적·다문화 한인들,” 아사쿠라 도시오·오타 심페이 엮음, 『한민족 해외동포의 현주소: 당사자와 일본 연구자의 목소리』. 서울: 학연문화사, 2012.
- 이영형.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2호 (2007).
- 이원웅. “북한 해외근로자, 어떻게 사나?.” 『통일한국』. 2013년 12호 (평화문제연구소), 2013.
- 임채완.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북한과 통일에 관한 인식 조사.” 『統一政策研究』. 제12집 2호 (통일연구원), 2003.
- 이애리아. “沿海州コリアンコミュニティの現状にみるもの.” 『グローバル化と韓国社会—その内と外—』. 69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2007.
- Turner, Terence. “Human Rights, Human Difference: Anthropology’s Contribution to an Emancipatory Cultural Politics.”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Vol. 53, No. 3 (University of New Mexico), 1997.

3. 기타

『로동신문』.

『매일경제』.

『연합뉴스』.

『주니치신문』.

『중앙일보』.

미국 국무부. “2014년 인신매매보고서.” 주한미국대사관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special_reports.html#trafficking>.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통일나침반 15-05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 02-2023-8000
팩스 : 02-2023-8297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전화 : 02-2269-9917
인쇄 2015년 11월
발행 2015년 11월

ISBN 978-89-8479-801-4 95340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통일연구원

www.kinu.or.kr



95340

9 788984 798014

ISBN 978-89-8479-801-4